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2019 자금지원안내





# 목 차

<b>I.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용자지원사업 안내</b> .....	1
<b>1. 용자지원사업 개요</b> .....	3
1. 2019년도 자금지원 내용(총괄) .....	5
2. 2019년도 자금지원지침 주요 개정 사항 .....	8
3. 자금지원지침 관련 주요내용(요약) .....	12
<b>2. 자금추천관련 서류 및 온라인 신청방법</b> .....	21
1. 자금신청 구비서류 .....	23
2. 절약시설 설치사업 자금신청 방법 .....	26
[첨부] 절약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작성 예시 .....	38
3. ESCO투자사업 자금신청 방법 .....	43
4. 추천변경 신청 방법 .....	49
5. 계속사업 신청 방법 .....	51
6. 추천포기 신청 방법 .....	53
7. 신청시 유의사항(공통) .....	55
8. E(energy)-Green 지점 운영 안내 .....	56
<b>3. 2019년도 자금지원지침 [산업부 공고 제2019-2호]</b> .....	57
<b>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세부기준</b> .....	87
<b>5. 참고자료</b> .....	117
1. 에너지절감량 산출방법 안내 .....	119
2. 연료 및 열의 석유환산기준 .....	121
<b>II. 세제 지원 안내</b> .....	123
<b>1.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b> .....	125
[첨부]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설비 .....	127
<b>2. 중소기업 중 ESCO 업종 특별세액감면</b> .....	130



I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용자지원사업 안내**

1

**용자지원사업 개요**

2

**자금추천관련 서류 및 온라인 신청방법**

3

**2018년도 자금지원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2)

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세부기준**

5

**참고자료**



1

용자지원사업 개요

1. 2019년도 자금지원 내용(총괄)
2. 2019년도 자금지원지침 주요 개정 사항
3. 자금지원지침 관련 주요내용(요약)

2019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및 자금지원 세부기준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jagum](http://www.energy.or.kr/jagum))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융자지원사업 개요

### 1. 2019년도 자금지원 내용 [총괄]

#### □ 사업 개요

-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절약형 시설 투자시 투자비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

#### □ 접수일정

- 2019년도 배정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 온라인 접수
  - 매월 1일부터 7일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 (단, 사정에 따라 접수기간 조정가능)
  - \*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

#### □ 지원대상 사업

##### ○ ESCO 투자사업

- 기술력과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 Energy Service Company)\*과 계약하여 에너지절약형시설로 신·증설 및 개체하는 사업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비, 자산 및 기술 인력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된 업체로 2018년말 기준 317개 업체 등록

##### <계약방식에 따른 ESCO사업 추진방법>

-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은 에너지사용자(고객)가 직접 조달(자체자금, 정책자금 등)하는 대신, ESCO는 시설투자에 의한 절감효과를 보증하며 보증절감액을 미달할 경우 에너지사용자에게 차액보전 또는 초과성과 배분 등 보증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방식
-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 사업자 파이낸싱 성과배분계약과 사용자 파이낸싱성과 보증계약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의 계약방식으로 ESCO가 투자재원을 조달하며 절감효과도 보증하는 계약방식
- 성과확정계약 :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은 ESCO가 조달하고 예상절감량(액)을 바탕으로 투자비 상환계획을 미리 확정하는 계약방식

###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자금지원지침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설치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 (생산시설 설치사업) 자금지원지침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고효율제품 등을 생산하는 자(중소기업에 한함)
-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자금지원지침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수요관리설비를 설치하는 자
- (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 투자사업)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 배출권할당 대상업체가 절약시설 설치사업 외에 에너지절감 또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5% 이상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2017년부터 절약시설 설치사업에 포함하여 지원)

### □ 자금지원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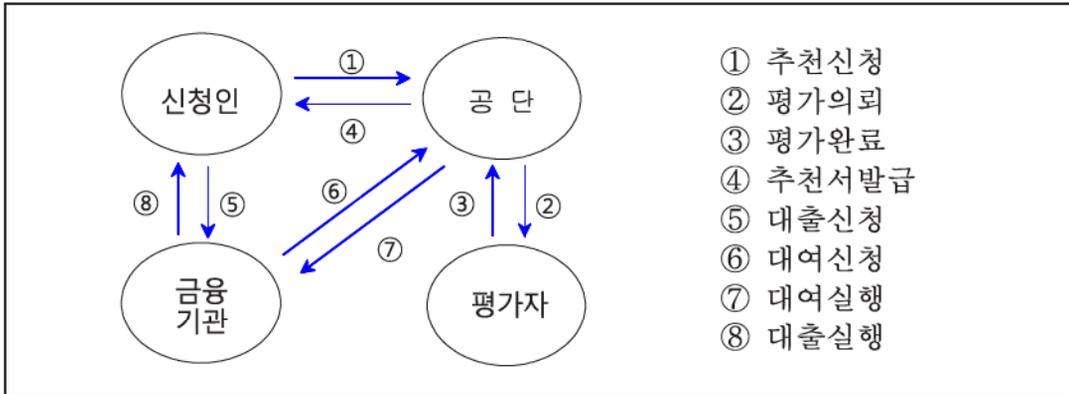
사업명		지원규모 (억원)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대출 기간	이자율
1. ESCO 투자사업		2,800	150억원 이내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단열 개·보수 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에너지및자원 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따름
2. 절약시설 설치사업	에너지절약 설치사업		15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생산시설 설치사업		10억원 이내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50억원 이내		

※ 위 표의 대출기간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의 규정에 따름

※ ESCO투자사업의 이자율 적용은 성과확정 및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은 ESCO,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은 에너지사용자를 기준으로 적용함

※ 자금추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별, 자금지원 세부내역별 지원규모를 조정 가능함

## □ 자금지원절차



\* 위 지원절차는 평가대상 사업일 경우에 해당되며, 비평가대상 사업은 별도 평가를 거치지 않고 지원대상 설비 적합성 검토 후 추천함

## □ 지원 대상시설 (84개 설비)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지침 세부내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사업

\* 자금지원 대상설비 세부내역은 자금지원지침 [별표1]에서 확인 가능함

## 2. 2019년도 자금지원지침 주요 개정 사항

※ 아래 내용은 2019년도 자금지원지침 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요약한 내용  
 이므로 자금지원지침 개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반드시 『2019년도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세부사업 예산 조정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세부사업 구분없이 예산 배정

세부사업	2018년(억원)	2019년(억원)	증감
ESCO 투자사업	700	2,800	△200
절약시설 설치사업	2,300		
합계	3,000	2,800	△200

### 나 “대기업ESCO+중소·중견사업장” 형태의 협력사업 지원

□ ‘15년 국회 지적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하였으나, 「대기업 ESCO + 중소기업·중견 사업장」 형태의 대·중소협력사업은 지원

\* ESCO투자사업 중 성과확정계약 또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이 해당

지침	기존	개정(안)
제4조(지원대상자)	①자금지원대상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으로 한다.	①자금지원대상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및 <u>중소·중견기업을 에너지사용자로 하는 대기업ESCO로 한다.</u> 단, 대기업ESCO는 ESCO투자사업에 한한다.

### 다 ESCO 투자사업 중 절약시설 설치사업은 신·증설 지원

□ 노후설비를 개체하는 경우에만 지원하였으나, 절감효과가 검증된 절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증설도 지원

\* 기존) 개체 → 변경) 개체, 신·증설

지침	기존	개정(안)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	1. ESCO투자사업 ①절약시설 <u>개체사업</u> - [별표1]의 제2, 제3의 가~자, 카 목 시설로 <u>개체하는 사업</u>	1. ESCO투자사업 ①절약시설 <u>설치사업</u> - [별표1]의 제2, 제3의 가~자, 카 목 시설을 <u>설치하는 사업</u>

## 라 시설의 개체 정의에 사업장 이전 포함

- 사업장 이전에 따라 폐기하는 기존설비를 대체하는 경우는 시설의 개체 정의에 포함

\* 기존) 개조·보완·대체 → 변경) 개조·보완·대체, 사업장이전(기존시설 폐기시)

지침	기존	개정(안)
제3조(용어의정의)	13. “시설의 개체”라 함은 동일 사업장에서 기존시설 또는 공정을 유사목적·유사기능의 향상된 시설 또는 공정으로 개조·보완·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13. “시설의 개체”라 함은 동일 사업장에서 기존시설 또는 공정을 유사목적·유사기능의 향상된 시설 또는 공정으로 개조·보완·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u>사업장 이전에 따라 폐기하는 기존시설을 대체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개체로 본다.</u>

## 마 집단에너지사업자 지원대상 확대

- “동일집단에너지사업자 내 사업장 상호간”의 열네트워크 구축사업도 지원
- “집단에너지사업자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20년 경과)”을 지원대상 추가
- 폐열이송설비에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수송설비는 제외”라는 문구 삭제

지침	기존	개정(안)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	9. 집단에너지사업자 상호간 열네트워크 구축사업	9. 집단에너지사업자 상호간 또는 동일집단에너지사업자 내 사업장 상호간 열네트워크 구축사업
	<신 설>	10. 집단에너지사업자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32. 폐열이송설비 - 공정폐열, 폐가스 등 폐열을 회수하여 다른 사업장에 공급 하거나 받기 위한 설비 · 다만,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수송시설은 제외	33. 폐열이송설비 - 공정폐열, 폐가스 등 폐열을 회수하여 다른 사업장에 공급 하거나 받기 위한 설비 <삭 제>

## 바 최상위 등급을 부여받은 효율기자재 생산시설 지원범위 확대

- 에너지효율등급표시가 없는 기자재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침	기존	개정(안)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	7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효율등급표시 기자재로서 최상위 등급을 부여받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	76.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효율등급표시 기자재로서 최상위 등급을 부여받은 또는 소비효율등급표시가 없는 기자재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

## 사 지원대상 중 “프리미엄 전동기” 를 “삼상유도전동기” 로 조정

- 삼상유도전동기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이 프리미엄 전동기 효율기준으로 상향 조정

지침	기존	개정(안)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	45. <u>프리미엄 전동기</u> -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거 <u>프리미엄전동기(IE3)로 등록된 삼상 유도전동기</u>	46. <u>삼상유도전동기</u> -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거 <u>삼상 유도전동기로 등록된 기자재</u>

**아**

**자금지원 세부내역(대상설비 및 사업)은 ‘18년 82개 → ‘19년 84개 조정**

- (설비 추가) 신규 설비공모로 선정된 ‘회생제동장치’, ‘인버터제어형 진공펌프’ 추가
- (설비 제외) 3년간 지원실적이 없는 ‘차열도료(Cool Roof)’ 는 제외

### 3. 자금지원지침 관련 주요내용 (요약)

#### 가 자금지원 개요

##### □ 지원 대상사업 및 설비

- 자금지원지침 [별표1] 자금지원세부내역 참조

##### □ 지원비율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100% 이내

##### □ 지원범위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 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다만,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 등은 제외함

#### 나 이자율 및 대출 취급 금융기관

##### □ 이자율(분기별 변동금리)

-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 수익률에 연동하여 분기별로 조정함

##### □ 대출 취급 금융기관(은행)

-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지역수협제외)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중 공단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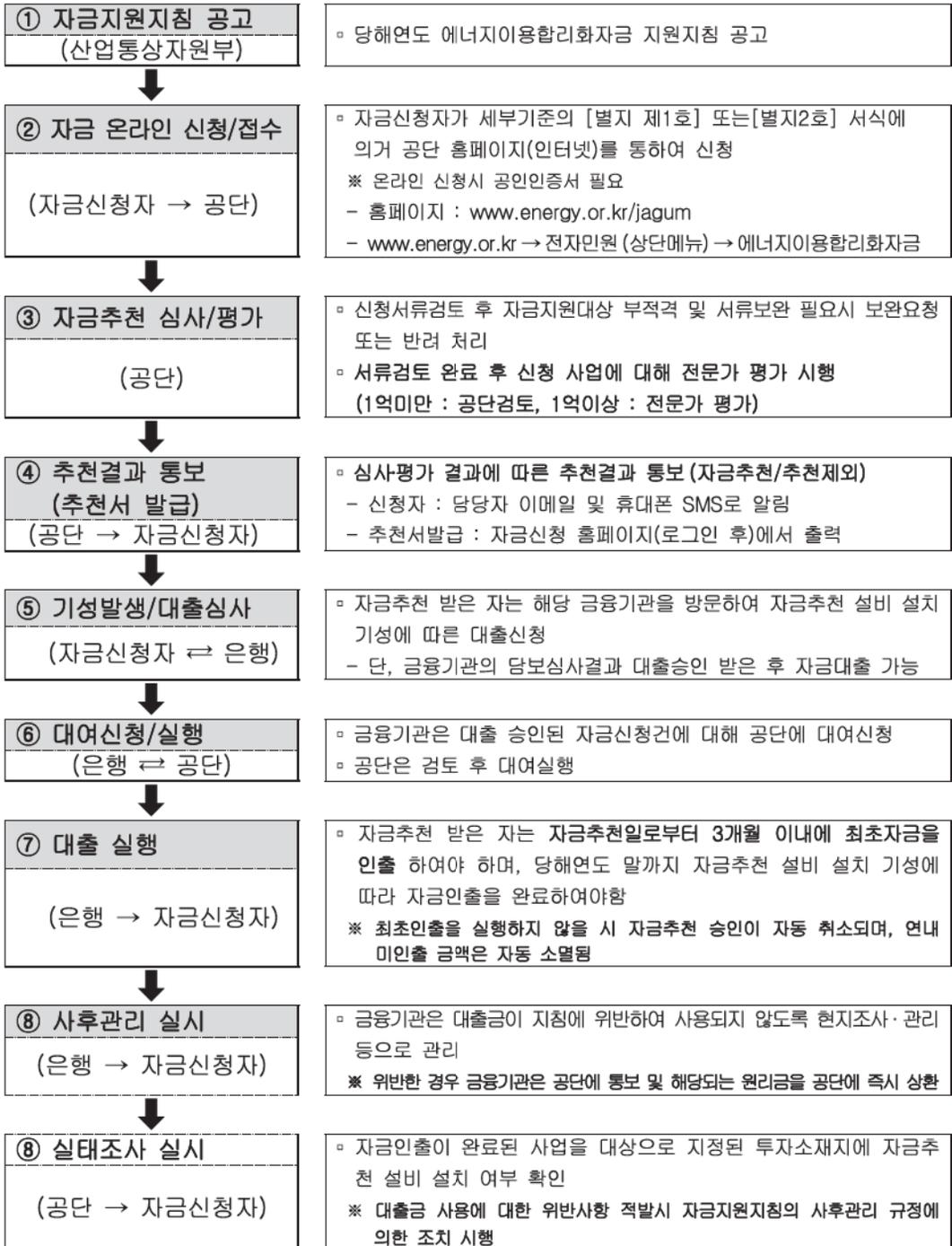
##### 〈대출 취급 금융기관 목록〉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하나은행(구. 한국외환은행 포함), 산은캐피탈

※ 위 금융기관 중 자금신청업체(자)가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신청(단, 단위농협, 단위수협은 제외)

## 다 자금 지원절차

□ 해당사업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의 자금추천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대출 승인 신청(신용조사서류, 담보서류 등을 제출)하여 대출 진행



## 라 자금추천 신청시

### □ 인터넷을 이용한 자금추천 신청

-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해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전자민원’(상단 메뉴) 중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신청’ 선택,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www.energy.or.kr → 전자민원(상단 메뉴)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신청

※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http://energy.or.kr/jagum> 직접 입력 후 접속

- 자금심사과정 중에 발생하는 주요사항(추천서 발급, 서류보완, 반려, 추천변경, 신청포기 등)은 온라인(신청화면 로그인 후)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자 이메일을 통한 공문 발송 및 휴대폰 SMS 알림 서비스 제공

※ 오프라인을 통한 별도 공문시행은 하지 않으며,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마 자금추천

- 자금추천을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에너지절감 효과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자금 추천할 수 있으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1) 전년도에 추천받은 계속사업
-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 설치사업
-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사업
-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제2항에 근거한 에너지진단결과에 따라 수행하는 시설, 공정 등을 개체 또는 개선하는 것으로서 진단 완료 후 2년 이내 실시하는 사업(공정별 또는 설비별 에너지절감효과가 5%이상인 경우에 한함)
- 5)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 6)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사업
- 7) 자금추천대상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 중소기업 지원강화를 위하여 정책자금의 전체 예산을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

하며, 공단은 자금추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별 구분 없이 지원 할 수 있음

- 공단은 당해연도 개시일 이후(전년도 4사분기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전년도에 추천 받은 계속사업은 당해연도 이전에 착수된 사업일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할 수 있음

## 바 대출승인 및 대출금의 지급

- 당해연도 소요자금으로 대출 승인된 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인출할 수 없음. 다만, 인출원인행위(대출승인)가 연도 내에 이루어지고 연도 내에 자금을 인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월하여 익년도 2월말까지 인출할 수 있음
- 금융기관(또는 공단)이 시설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의 설치(설치장소, 시설의 사양 등) 또는 제작현황이나 용역제공 등에 대한 일치 여부를 현지조사와 관련서류(세금계산서 등)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자금지원비율을 감안하여 자금을 지급함. 다만, 기성고를 인정함에 있어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1) 자금 지급시 추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자금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기성고로 인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총사업비(전체 추천대상금액 기준)의 50%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 2) 해당시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수입어음 결제예정액을 기성고로 인정하여 수입어음 결제일에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음
  - 3) ESCO투자사업의 기성고 확인은 현지조사 및 ESCO투자사업의 계약당사자인 에너지사용자와 ESCO간의 관련서류(세금계산서 등)를 기준으로 함. 다만, 에너지사용자와 ESCO간의 관련서류(세금계산서 등)를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ESCO의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대해서는 재료비, 노무비의 기성고 비율과 같은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사업수행보고서 제출

- 자금사용자는 당해연도 최종자금 인출 전에 사업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은 사업수행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후 공단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공단은 제출받은 사업수행보고서를 확인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금 사용자에게 대하여 향후 자금추천 심사를 보류하거나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사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 취소

### □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의 취소 등

- 공단으로부터 추천(또는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자금추천일(또는 KEA로부터 대출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자금인출(추천금액의 20% 이상)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됨
-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 또는 금융기관(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당해연도 말까지 인출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미인출 잔액에 대하여 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됨
- 자금 대출은 금융기관에 담보 등의 제공이 필요하며 대출 부적격 판정시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설비계약 전 해당 은행과 반드시 협의 후 신청해야 함
-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반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이 취소되며, 해당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자금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함

## 아 사후관리

- 금융기관(또는 공단에서 직접 대출한 경우는 공단)은 대출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대출금이 지침에 위반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현지조사·확인 등 관리를 하여야 하며, 대출금이 지침에 위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된 때에는 관련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되는 원리금을 공단에 즉시 상환하여야 함(공단에서 직접 대출한 경우는 공단이 회수함)
  - 1) 자금추천된 사업이 취소 또는 중단된 때
  - 2) 자금사용자 또는 해당사업이 자금추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때
  - 3) ESCO가 자금지원지침 제 30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지 않는 때
- 대출금을 추천된 목적 외 사용한 사업자에 대한 벌칙 사항
  - 향후 3년간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출금 중 위반에 해당되는 원리금을 유용시부터 상환일까지 정부지정 연체이자(연리 13%)를 포함하여 징수
- 자금지원설비를 시공하는 자(ESCO투자사업의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 계약의 경우에는 ESCO)가 위반사항에 관련된 경우에 대한 벌칙 사항
  - 자금지원지침 [별표2] 자금추천시설 설치업체의 위반사항에 관한 조치기준에 따라 해당 시공업체가 참여하는 자금추천신청에 대하여 2년 이내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자 실태조사

### □ 자금지원 완료사업 대상 실태조사 실시 등

- 공단은 지원한 자금이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자금이 지원이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민원·환경영향 우려 등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금추천 단계 또는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사업자(에너지사용자 포함)가 공단의 실태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단은 지원된 자금의 회수, 자금추천대상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차 자금 신청전 유의사항

### □ 자금의 성격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대출시에 담보가 필요한 자금이므로,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충분히 협의하여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 가능한 은행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 최소 신청액은 2,000만원 이상

- 최소 신청액은 2,000만원 이상이며, 추천액은 100만원 단위로 함
- 다만, ESCO투자사업의 단열 개·보수사업은 최소 1,000만원 이상

### □ 대상시설의 성능 및 범위

- 신청 대상 시설의 설치장소·설치조건 등에 따라 시설의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능 및 용량·설치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나 공단이 시설의 성능을 보장하지 않음
- 용자지원 대상설비는 자금지원지침 [별표]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규정된 시설을 말하며, 원리나 구조가 자금지원 대상시설로서 적합하면 제조업체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별 심사기준에 따라 자금 추천함

※ 산업통상자원부나 공단은 특정설비 또는 특정업체에 대한 인 증은 하지 않음

※ 심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19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세부기준』 참조

###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확인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우대를 받고자 하는 법인신청자는 아래 양식의 확인서가 필요함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해 규정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예)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개인사업자(사업주 본인을 포함하여 1인 이상이 근무하는 모든 사업자), 영리특별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의료기관(개인병원) 등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에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

※ 다만,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중소기업으로 인정

## □ 첨부서류 관련

- 계약서에 설치기기의 모델명 및 부가가치세(VAT) 포함 여부를 정확히 기재하고, 계약내역서(견적서)는 상세히 기재해야 함
  - ※ '설치보조금'을 받는 심야전력이용 축냉설비, '고효율기기 장려금'을 받는 기기 등을 신청할 때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 액수가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
- 첨부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그림 파일(jpg, pdf)을 첨부해야 하며, 가급적 PDF파일로 첨부(엑셀, 한글 등 수정 가능한 파일 첨부 불가)
- 설치장소와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다를 경우 추가 제출서류
  - 설치장소인 건물(토지)이 신청자 소유인 경우 : 설치장소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또는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허가서 등 첨부
  - 설치장소인 건물(토지)를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 :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첨부

## □ 자금신청 반려 대상

- 자금지원 대상 자격이 부적격인 경우
  - 자금지원지침에 의한 자금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전년도 9월 이전에 착수된 사업, 사후관리 위반 사업자의 신청, 전년도 이전에 기지원한 시설의 신청, 시공사가 신청자인 경우 등
- 자금추천 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
  - 계약서, 계약내역서, 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 등 필수서류 미첨부시
- 보완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ESCO 투자사업의 경우 10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 □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자금추천 여부 결정

- 자금추천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방식 도입으로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추천 여부 결정

※ 평가점수가 낮을 경우 자금지원 대상설비라고 하더라도 자금추천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심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19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세부기준」 참조



2

자금추천관련 서류 및 온라인 신청방법

1. 자금신청 구비서류
2. 절약시설 설치사업 자금신청 방법  
[첨부] 절약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작성 예시
3. ESCO투자사업 자금신청 방법
4. 추천변경 신청 방법
5. 계속사업 신청 방법
6. 추천포기 신청 방법
7. 신청시 유의사항(공통)

2019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및 자금지원 세부기준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jagum](http://www.energy.or.kr/jagum))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SCO 투자사업 : 031) 260-4361~2,5~6 ☎절약시설 설치사업 : 031) 260-4361~6



2

자금추천관련 서류 및 온라인 신청방법

1. 자금신청 구비서류

□ 공통 구비서류

번호	구 비 서 류	해 당 시 설	관 계 기 관	비 고
1	추천신청서	공통필수	공 단	온라인 용자시스템
2	공사(ESCO)계약서, 세부내역서	공통필수	시공업체	
3	기기도면(제품 카달로그), 설치도면(배치도)	공통필수	시공업체	
4	사업자등록증	공통필수	세무서	
5	에너지절감효과 산출근거자료	공통필수	신청자	수요관리설비는 제외
6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공통필수	신청자	[별지 제9회] 서식 (전년도 계속사업은 제외)
7	에너지진단결과 보고서	①~④, ⑦	에너지진단기관	
8	보조금 계산근거	③, ⑧, ③⑨, ⑦⑨~⑧①, ⑧④ 등	신청자	타 보조금 지원시
9	교체전 설비사진	-	신청자	설비 교체시
10	법인등기부등본 등 소유(또는 임대) 증빙자료	-	등기소	설치장소가 다른 경우
11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12	중소기업지원사업 정보활용 동의서	-	신청자	중소기업
13	중견기업확인서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14	시공업체확인서	-	시공업체	
15	특별시방서	공통필수	신청자	ESCO투자사업
16	에너지절감량 확인서 또는 보증서	공통필수	신청자	ESCO투자사업
17	사후관리계획서(MRV포함)	공통필수	신청자	ESCO투자사업
18	하자보증서	공통필수	신청자	ESCO투자사업
19	사업 전·후 설치도면(배치도)	공통필수	신청자	ESCO투자사업
20	환경관련 각종 인허가증	공통필수	행정기관장	ESCO투자사업(해당시)
21	투자비상환계획서	-	신청자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 또는 성과확정 계약시

\* 모든 구비서류는 자금추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그 밖에 자금지원지침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의 비고란을 만족하는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 설비(시설)별 구비서류(※ 필요시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설비(사업)	제출서류	비 고
⑥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사업	1. EnMS 참여신청서 또는 인증서	
⑦ 에너지진단결과 개선사업	1.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에 의한 에너지진단 결과보고 (진단완료일자 확인자료) 2. 에너지진단 결과보고서(공정별 또는 설비별 진단효과 자료) 3. GGP 기술지도보고서(대·중소기업 동반녹색성장 협력사업)	
⑨ 집단에너지 사업자 상호간 또는 동일집단에너지사업자 내 사업장 상호간 열네트워크 구축사업	1.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증 2. 공사계획 승인(신고)서	
⑩ 집단에너지사업자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1.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증 2. 공사계획 승인(신고)서 3. 준공 관련 서류	
⑪ 기술개발 실용화 설비	1. 에너지절약효과(10%이상) 증빙자료 2. 자금추천위원회 발표자료 및 필요서류	
⑭ 노후 보일러 개체	1. 점검사대상기기 : 노후 보일러 명판 2. 보일러 설치도면 3. 설치보조금 계산 근거(저녹스버너 보조금 등에 해당되는 경우)	
⑮ 폐열이용 보일러	1. 기설치된 소각로 도면 및 사진(소각폐열을 이용하는 경우)	
⑳ 전기 유도용해로 ㉑ 고주파 유도 가열장치	1. 수변전설비 결선도	
㉔ 에너지절약형 가열로 또는 열처리로	1. 제어계통도 설명자료(공연비, 로내온도)	
㉕ 폐열 또는 폐압력 이용 발전장치	1. 기설치된 소각로 도면 및 사진(소각폐열을 이용하는 경우)	
㉗ 폐열이송설비	1. 열공급(잉여열)계약서	
㉘ 히트펌프 (폐열회수형 또는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1. 배관계통도	
㉚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1. 인버터적용 증빙서류(카달로그)	
㉜ 밀폐식 연속 수세장치	1. 수세온도 자동조절장치 설명자료	
㉞ 저육비염색기	1. 육비관련 증빙자료(시험성적서, 카달로그 등)	
㉟ 히트셋팅기	1. 온도자동제어 및 배기습도감지로 배기량자동 조절 설명자료	

설비(사업)	제출서류	비 고
68 에너지절약형 공기조화시스템	1. 장비일람표 2. 기타 에너지절약특성 설명자료	
70 건물자동화 제어장치	1. 장비일람표 2. 에너지절약 자동운전제어 설명자료	
73 창세트	1.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건축물대장	
75 공회전제한장치, 운전모니터링 시스템 및 에어스포일러	1. 공회전제한장치 인증서 (국립환경과학원) 2. 디지털운행기록계 등록서류 (교통안전공단)	
76 에너지효율등급표시기자재 (최상위 등급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 생산시설 77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생산시설 78 대기전력 저감기기 생산시설	1.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sup>주1)</sup> (제조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 포함) 2. 당해 연도 매출실적 확인서 <sup>주2)</sup> 3. 투자소재지에 대한 공장등록증, 부지관련 확인 서류 등	
79 심야전력이용 축냉설비	1. 장비일람표 2. 설치보조금 계산근거 3. 한국전력공사의 심야전력 전기사용신청서 4. 심야전력기기 인정 및 보급에 관한 계약서 (규격서 포함)	
80 가스히트펌프 81 흡수식냉방시설	1. 장비일람표 2. 냉난방계통도 3. 설치보조금 계산근거	
82 상용자가발전 설비	1. 장비일람표	
84 전력저장장치	1. 장비일람표 2. 계통도 3. 설치보조금 계산근거 4.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주1) 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의 확인본으로 제출(연간매출액에 당해제품만의 실적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제품의 분리매출액(생산월보 등)이 첨부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서 제출)

주2) 당해제품의 매출액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거래명세서 등)

## 2. 절약시설 설치사업 자금 신청 방법

### □ 신청화면로그인 [ ESCO/절약사업 공통 ]

1)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신청 또는 <http://www.energy.or.kr/agum>

한국에너지공단 KOREA ENERGY AGENCY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사업소개 | 지원사업 | 마이페이지 | 알림마당 | 고객지원센터

개요 | ESCO투자사업 | 위임정보수정 | 공자사관 | 시스템안내  
 지원조건 |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 진행현황 | 자료실 | 공인인증서안내  
 지원절차 | 투자사업 | 사업신청 | FAQ | 공인인증서안내  
 위급운영및 금리변동 | 절약시설 설치사업 | 변경신청 | 기타  
 세액공제 안내 | 접수현황 | 포기신청  
 계속사업신청

에너지절약 투자 파트너!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사업이 함께합니다.

**STEP 1**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이 공금합니다.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시 소요되는 투자비용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용자공입니다.  
• ESCO 투자사업  
•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투자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STEP 2**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2018년 1월 4일(월) 09:00 ~ 1월 8일(금) 18:00  
• 지원조건  
• 지원절차  
• 사업신청

**STEP 3**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접수마감일로부터 추첨서류일까지는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진행현황  
• 변경신청  
• 포기신청

①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http://www.energy.or.kr))에서 [전자민원]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신청]을 선택하면 자금지원 홈페이지에 접속됩니다. 홈페이지 상단 로그인 (최초 로그인시에는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2) 신청자 로그인 ->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한국에너지공단 KOREA ENERGY AGENCY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사업소개 | 지원사업 | 마이페이지 | 알림마당 | 고객지원센터

Save M  
Save E  
Save E

에너지절약 투자 파트너!  
에너지이용 합리화

**STEP 1**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이 공금합니다.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시 소요되는 투자비용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용자공입니다.  
• ESCO 투자사업  
•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투자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로그인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와 로그인번호를 안보이실 경우 인터넷상 당일에 도구>호환성토큰기입니다.

아이디 (사업자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로그인

인증서선택기 | 비밀번호 | 확인

인증서 검증 | 인증서 보기 | 인증서 관리 | 인증서 신청 | 종료

공인인증서 분실신고는 e-센터 118

① 아이디(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하면 공인인증서 화면이 나타납니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 신청업체 대표자가 아닌 직원 또는 시공업체 직원의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작성된 신청서는 반려됩니다.

## □ 최초 신청 시 업체정보 입력

### 1) 업체정보작성

업체명	<input type="text"/>	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비밀번호	<input type="text"/>	비밀번호 확인	<input type="text"/>
대표자명	<input type="text"/>		
대표자 E-Mail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직접입력	<input type="text"/>
대표자연락처 (사무실)	선택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대표자연락처 (휴대전화)	선택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법인등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업체종류	<input checked="" type="radio"/> 대기업 <input type="radio"/> 중소기업 <input type="radio"/> 중견기업 <input type="radio"/> 공공기관 <input type="radio"/> 건물 <input type="radio"/> 기타
사무소전화	선택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사무소FAX	선택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사무소주소	<input type="text"/>		
업종	선택 <input type="text"/>	우편수령지	<input type="radio"/> 사무소 소재지 <input checked="" type="radio"/> 투자지 소재지
담당자명 (설비담당)	<input type="text"/>	담당자부서/직책 (설비담당)	<input type="text"/>
담당자 E-Mail (설비담당)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직접입력	<input type="text"/>
담당자전화 (설비담당)	선택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담당자전화 (설비담당)	선택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담당자명 (재무/회계)	<input type="text"/>	담당자부서/직책 (재무/회계)	<input type="text"/>
담당자 E-Mail (재무/회계)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직접입력	<input type="text"/>
담당자전화 (재무/회계)	선택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담당자전화 (재무/회계)	선택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①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처음으로 이용하는 신청자가 최초 로그인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이 업체기본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규 신청서 작성 및 자금지원 관련 공지사항 전달시 사용될 정보이니 정확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 2) 업체정보관리 작성

업체명	<input type="text"/>	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비밀번호	<input type="text"/>	비밀번호 확인	<input type="text"/>
대표자명	<input type="text"/>		
대표자 E-Mail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직접입력	<input type="text"/>
대표자연락처 (사무실)	선택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대표자연락처 (휴대전화)	선택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법인등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업체종류	<input checked="" type="radio"/> 대기업 <input type="radio"/> 중소기업 <input type="radio"/> 중견기업 <input type="radio"/> 공공기관 <input type="radio"/> 건물 <input type="radio"/> 기타

① 로그인에 필요한 비밀번호 (숫자 네자리)를 설정하여 입력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비밀번호를 [비밀번호 확인]란에 입력합니다.  
 ※ 초기 회원등록 이후에는 설정하신 아이디 (사업자 번호)와 비밀번호 (숫자 4자리)로 공인인증서 없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② [업체종류]에서 중견기업/중소기업 등을 선택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을, 비영리기관 등은 기타를 선택합니다.

사무소전화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사무소FAX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사무소주소	<input type="text"/>		
업종	<input type="text"/>	우편수령지	<input type="radio"/> 사무소 소재지 <input checked="" type="radio"/> 투자지 소재지
담당자명 (설비담당)	<input type="text"/>	담당자부서/직책 (설비담당)	<input type="text"/>
담당자 E-Mail (설비담당)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naver.com <input type="text"/>	
담당자전화 (설비담당)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담당자전화 (설비담당)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담당자명 (재무/회계)	<input type="text"/>	담당자부서/직책 (재무/회계)	<input type="text"/>
담당자 E-Mail (재무/회계)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naver.com <input type="text"/>	
담당자전화 (재무/회계)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담당자전화 (재무/회계)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③ [검색] 버튼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한 사무소 주소를 입력하고 투자 주소가 다른 경우 별도로 투자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투자지 주소가 복수인 경우 각각 별도로 신청 하여야 함)

※ 신규 등록 사업장이나 최근 새로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사업장명이  
신주소로 명시된 업체께서는 구주소와 신주소를 같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구 포은대로 388 (풍덕천2동 1157번지)  
(신주소) (구주소)

④ [업종] 메뉴에서 업종을 선택합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항목이 없으면 가장  
근접한 업종을 선택합니다.

⑤ 담당자 정보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담당자와 대출을 담당하는 재무/회계  
담당자로 구분하여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저장합니다.

※ 특히, 이메일 주소는 추천서 발급과 관련한 공문이 발송되므로 시공업체 직원의  
이메일 주소가 아닌 해당 사업장 소속 직원의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  
바랍니다.

## □ 신청서 작성하기

### 1) 신청서 작성



**한국에너지공단**  
KOREA ENERGY AGENCY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님 환영합니다.

사업소개	지원사업	마이페이지
개요	ESCO투자사업	회원정보수정
지원조건	절약시설 설치사업	진행현황
지원절차	E-Green 지정 안내	추천신청
취급은행 및 금리변동	접수현황	변경신청
세액공제 안내		포기신청
		계속사업신청

**STEP 1**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이 **공급합니다.**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시 소요되는 투자비를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융자금입니다.

- ESCO 투자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STEP 2**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2017년 8월 1일(화)~  
2017년 8월 7일(월) 09:00~18:00

- 지원조건
- 지원절차
- **사업신청**

① [마이페이지] - [추천신청] 또는 'STEP2' - '사업신청'을 클릭하여 사업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수정
- 사업신청**
- 진행현황
- 변경신청
- 포기신청
- 계속사업신청

**사업신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홈페이지에서 각 사업별 추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HOME > 마이페이지 > 사업신청

- 신청서 작성은 수시로 가능하지만 제출은 접수일에만 가능합니다.
- 신청서 제출은 접수일 09시 ~ 18시 까지입니다.





**ESCO 투자사업**

신청하기



**절약시설 설치사업**

신청하기



**에너지 신사업**

신청하기

② 절약시설 설치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절약시설 설치사업]으로 ESCO 투자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ESCO 투자사업]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 작성

0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사전점검 > 추천신청서 > 시설투자계획서 > 절감효과산출 > 추천시설명세 > 첨부서류

③ 신청서 작성은 [사전점검] 단계가 추가되어 0단계부터 [첨부서류]까지 6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0단계 : 사전점검리스트 작성

사전점검 > 추천신청서 > 시설투자계획서 > 절감효과산출 > 추천시설명세 > 첨부서류

→ 각 항목 확인 후 확인란에 '확인'이라고 입력해주세요.  
(미 확인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불가)

NO	항목	확인내용	확인
1	지원대상	·최소 신청금액(2,000만원) 충족 여부(부가가치세 제외) ·지원대상(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여부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중견기업 확인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준비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계약서	·계약일자(건년도 10월 이후) 확인 ·계약 당사자 직인 날인 확인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 정확히 기재	<input type="checkbox"/>
3	지원대상분야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원-[별표1]지원 세부내역 확인 <b>세부내역 확인</b>	<input type="checkbox"/>
4	대출심사가능 사건확인서	·업체현황, 금액 등에 대해 해당은행의 확인을 받았음(작성일자 기재)	<input type="checkbox"/>
5	설치장소	·사무소, 투자지 주소가 다른 경우 : 투자지 소유(또는 임대) 증명자료 준비(법인등기부등본, 매매(임대)계약서 등) ·ESCO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장 이전은 지원대상에 아님	<input type="checkbox"/>
6	관련인허가사항	·사전 인허가 사항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음(대기배출허가, 발전사업허가 등)	<input type="checkbox"/>
7	기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받은 경우(적건년도 및 당해년도에 예비인증받은 건축물에 한함)는 '인증서'를 추가하신 경우에만 가점에 인정됨	<input type="checkbox"/>

※ 위 사항을 빠짐없이 확인하였으며, 확인사항과 제출한 신청서류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신청반려, 접수취소, 처리 지연, 추천불가 등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음을 확인합니다.

- ① 사전점검리스트 각 항목 확인 후, 준비하지 못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준비를 완료한 후 신청서 작성
- ② 준비가 완료된 경우에 확인란에 '확인'이라고 입력
- ③ 다음 버튼 클릭 → 추천신청서 단계로 이동
- ※ 사전점검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으면 추천신청서 작성이 불가하며, 서류 검토 시에 확인 사항과 상이할 경우 신청서가 반려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단계 : 추천신청서 작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재신청	<input checked="" type="radio"/> 절약시설 설치사업 <input type="radio"/>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투자사업	<input type="radio"/> 신·증설 <input type="radio"/> 개체 (기존시설 또는 공정의 개조 보완 교체)
---	--	---

- ① 당해연도 최초로 신청된 사업은 신청한 사업은 신규로 신청하고, 신청한 사업이 추천에서 제외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② '절약시설 설치사업'에 체크합니다.
- ③ 기존에 운전하던 설비를 폐기 또는 철거하여 신청하는 설비가 기존의 설비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개체'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증설'을 선택합니다.

※ 열교환기와 같이 폐열을 회수하는 설비와 인버터 등과 같이 기존설비에 추가되는 설비, 공정개선사업 등은 '개체'를 선택합니다.

업체명	<input type="text"/>	사업등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대표자명	<input type="text"/>	기업구분	<input type="radio"/> 중소기업 <input checked="" type="radio"/> 중견기업 <input type="radio"/> 대기업 <input type="radio"/> 공공기관 <input type="radio"/> 비영리기관 <input type="radio"/> 기타
법인등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사무소주소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Q 검색"/>		
사무소 전화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사무소 fax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업종	<input type="text"/> 선택	생산제품	<input type="text"/>
투자지주소 *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조회"/>		
투자지 전화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투자지 FAX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담당자명(신청설비) *	<input type="text"/>	담당자부서/직책(신청설비) *	<input type="text"/>
담당자 EMAIL(신청설비)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담당자명(신청설비) *	사무실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담당자부서/직책(재무/회계) *	휴대전화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담당자명(재무/회계) *	<input type="text"/>		
담당자 EMAIL(재무/회계)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담당자명(재무/회계) *	사무실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휴대전화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④ 업체정보는 '업체정보관리'에서 입력한 내용이 자동으로 채워지고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추천신청서에서 일부 직접변경도 가능합니다.

- ⑤ [설비명]을 클릭하고 시설명에 신청하고자하는 설비의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
- ⑥ 검색결과 목록에 나타나는 설비 중 신청하는 설비를 선택하고 아래 지원조건을 확인한 후 확인버튼 클릭합니다.

총 공사기간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총 사업비 (VAT제외)	<input type="text"/> 0 백만원
추천신청액 (VAT제외계속사업은 당해연도분임)	<input type="text"/> 0 백만원

- ⑦ 총 공사기간은 계약서상의 공사 시작일과 종료일입니다.
- ⑧ 총 사업비는 계약서상의 공사비와 일치해야 합니다.
- ⑨ 추천신청액은 4단계 추천시설명세에서 입력한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단위는 백만원 단위), 계속사업인 경우 당해연도 사업비를 입력합니다.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radio"/> Yes <input type="radio"/> No	차수	1차년도 <input type="text"/> 2012	2차년도 <input type="text"/>	3차년도 <input type="text"/>
	연차별 사업비	1차년도 <input type="text"/> 백만원	2차년도 <input type="text"/> 백만원	3차년도 <input type="text"/> 백만원
	추천번호	1차년도 <input type="text"/>	2차년도 <input type="text"/>	

- ⑩ 신청하는 사업이 2개년 또는 3개년에 걸쳐 공사가 진행 되는 경우에만 계속사업에 Yes를 선택하고 각 년도별 신청금액을 입력합니다.

용자취급은행	신한은행 <input type="text"/> 지점	055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기타정책자금사용여부 (장려금, 보조금 등)	<input type="radio"/> Yes <input checked="" type="radio"/> No	
용자선택	<input checked="" type="radio"/> 정책용자 <input type="radio"/> 이차보전용자	

- ⑪ 추천서 발급이후 대출을 진행할 은행을 선택하고 해당지점과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용자취급은행은 첨부서류 중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를 발급한 금융기관과 일치되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⑫ 다른 기관 혹은 공단으로부터 동일 설비에 대해 보조금 혹은 장려금 등 기타 정책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용 예정일 경우는 Yes, 아닌 경우는 No를 선택합니다.

## ○ 2단계 : 시설투자계획서 작성

**1. 사업계획서 (필요시 별도 작성 후 첨부)**

사업목적 (정책과 연계성 등)	<input type="text"/>
사업추진내용 (사업의 타당성 등)	<input type="text"/>
추진성과 (기대효과, 보급효과 등)	<input type="text"/>
파일첨부	<input type="button" value="첨부하기"/> <input type="button" value="삭제"/>

① 전반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공단 담당자 또는 외부 평가위원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사업의 목적, 추진내용, 성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력합니다.

**2. 선정설비 일반현황(주설비 위주로 기재)**

선택	시설명	모델명/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용도 및 기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 시설의 주요특징  
→ (\* 자금지원 대상설비 조건 충족 여부 및 설비 수량, 용량 선정 근거 기재)

Q/4000byte

② 주요 설비위주로 설치되는 시설의 설비명과 모델명, 용량, 단위 (kWh, ton, HP 등), 설치대수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입력 바랍니다.  
※ 설치완료 후 현장 확인 시 설비의 적합 또는 부적합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 3단계 : 절감효과산출 작성

- ①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개선 전/후 에너지사용량 등록창이 생성됩니다.
- ② 신청하는 설비의 이름과 용량, 단위를 입력하고 개선 전/후 에너지를 선택한 다음 연간 에너지사용량과 사용금액을 각각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 ③ 입력한 개선 전/후 사용량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근거자료를 **[첨부하기]**에 첨부합니다.  
※ 개선 전/후 에너지사용량과 관련된 내용은 평가의 주요사항으로 수요관리시설을 제외한 모든 설비(사업)은 개선 전/후 에너지사용량입력과 관련 근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첨부한 절감효과 산출근거와 사업계획서의 추진성과는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3. 기대효과 산출

선택	설비현황	개선전에너지사용량						
설비명	용량	단위	에너지종류	사용량	환산계수	석유환산톤 (TOE/yr)	연간사용금액(백만원/yr)	에너지종류
입계								
파일첨부	첨부하기	삭제						

+ 항목추가   + 수정   x 삭제

---

**개선전후 에너지사용량 등록**

에너지원 참고 자료 [1] [2]

설비명  용량  단위

개선전			개선후		
에너지원	취발유	단위	에너지원	취발유	단위
환산계수	0.8		환산계수	0.8	
연간 에너지 사용량	<input type="text"/>	kl/yr	연간 에너지 사용량	<input type="text"/>	kl/yr
석유환산톤	0	TOE/년	석유환산톤	0	TOE/yr
연간 에너지 사용금액	<input type="text"/>	백만원/년	연간 에너지 사용금액	<input type="text"/>	백만원/년

확인

CLOSE

④ 연간 에너지 사용량과 사용금액의 단위를 유의하여 해당 칸에 작성바랍니다.

→ 기대효과 산출근거자료 파일은 평가에 참고되는 필수자료이므로 반드시 첨부바람

4. 기타(에너지 절감 효과 이외) 기대효과 여부(필요시 별도 작성 후 첨부)

개요	<input type="text"/>
세부내용	<input type="text"/>
파일첨부	

⑤ 해당시설을 설치하였을 때 에너지절감효과 이외의 기타 기대효과(공정시간 단축, 수율 증가 등)를 작성하고, 기타 기대효과 항목은 추천평가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최대한 자세히 작성바랍니다.

### ○ 4단계 : 추천시설명세 작성

**1 계약내역 집계표**

선택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서금액(천원, VAT제외)
합계			

계약발상세조회 - Windows Internet Explorer

**계약발상세조회**

**기본정보**

계약명:  계약서금액:  0 원

**시공업체 상세정보**

계약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체주소:  사무실전화:

대표지명:  FAX:

담당자명:  담당자이메일:

부사/직함:  휴대전화:

**재료비 (구체적으로 입력)**

선택	시설명	금액	단위	수량	2012년도금액(천원)	금액합계
합계						

**노무비 (구체적으로 입력)**

선택	시설명	금액	단위	수량	2012년도금액(천원)	금액합계
합계						

① 추천시설명세는 계약건별로 각각 작성을 하고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계약별 상세조회 창이 나타나면 계약내용에 대하여 입력합니다.

② 계약을 체결한 시공업체의 정보를 입력하고 **[행추가]** 버튼을 사용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세부항목별로 가능한 구체적으로 입력합니다.

※ 비고란에 모델명(제조사)형식으로 입력합니다. (예시) ABC-011(○○업체)

※ 금액의 단위(천원)에 유의하여 입력합니다. 추천시설명세는 5단계 첨부서류의 '2. 상세내역집계표'와 일치해야 하고, 전체 추천시설명세금액의 합계는 1단계의 추천신청액과 같아야 합니다.

**3 월별안출계획**

단위 : 천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 ① 사업계획에 맞는 월별 인출계획을 작성하고, 인출계획은 앞서 기재한 총 사업기간과 은행 대출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정확히 작성합니다.
  - ② 월별로 정확한 인출금액 숫자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합계금액 집계됩니다. 계속사업인 경우는 당해연도 자금신청금액과 계획조사 합계금액을 동일하게 작성하고, 작성이 다 끝나시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추천시설명세 작성합니다.
- ※ 월별 인출계획조사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2019년 자금운용계획에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조사이니만큼 사업 및 설치계획에 맞는 정확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 ○ 5단계 : 첨부서류 작성

**신청서 작성**

0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사전점검
> 추천신청서
> 시설투자계획서
> 절감효과산출
> 추천시설명세
첨부서류

**공통**

1. (필수) 계약서(ESCO 계약서)(10건까지 가능).

필약 지원년도.PNG

첨부  
삭제

2. (필수) 공사비 상세내역서(7건까지 가능).

첨부  
삭제

3. (필수) 사업자등록증(4건까지 가능).

첨부  
삭제

- ① 계약서, 상세내역집계표(계약일자, 직인 필수), 설비도면, 사업자등록증, 절감산출근거, 대출심사가능사전확인서, 시공업체확인서 등은 필수제출 서류이므로 반드시 첨부합니다.
- ※ 사무소주소와 투자지 주소가 다른 경우 투자지에 대한 소유 또는 임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첨부합니다.
- ② 신청하는 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자가 유효기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구. 중소기업청) 발급) 등을 첨부하고, 중견기업은 '중견기업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③ 신청하는 설비(사업)별로 첨부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으므로, 설비별 첨부서류를 확인 후 관련서류를 첨부합니다.
- ※ 제출하는 첨부서류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합니다.

## ○ 신청서 제출 전 최종 확인 단계

**☑ 선택별**  
 ★ 시설의 개제 및 공정개선 사업의 경우 동일 경우 사업건, 후 도면을 기타에 첨부

1. (필수) 선택도면(Layout, 카타로그 등)(10건까지 가능).  
 첨부 파일명: PNG

첨부  
삭제

→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만 신청서가 최종 제출되며, 신청서제출은 근무시간(09:00 ~ 18:00)내에만 가능합니다.

**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한국에너지공단 추천신청서에서 수집하게 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신청서제출 시점으로부터 30년간 보관하고 표기합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과 관련하여 귀(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에 관련내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동의합니다.

**이메일 수신 동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과 관련하여 지점 개점, 추가접수 등 사업의 중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공단에서는 메일발송을 통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제공하는 메일 알림 서비스를 받고자 하신 사업자는 아래 동의함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동의합니다.  이에동의하지 않습니다.

인쇄   
  **신청서제출**   

① 하단에 **[신청서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서 제출 전 최종확인' 팝업창이 나옵니다.

신청서 제출 전 최종확인 - Internet Explorer

**신청서 제출 전 최종확인**

※ 사전점검리스트에 확인했던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본 자금은 자금지원지침에 따라 신청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부적절하게 사용된 자금은 해당 원금과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환수됨을 명확히 인지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자금사용자(대표자)    김경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② 사전점검리스트를 충족하였는지 최종 제출 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 작성한 신청서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 **[닫기]** 버튼 클릭 후, 신청서 수정
- 최종을 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최종 제출]** 버튼 클릭

③ 공인인증서 인증 창으로 넘어가면 비밀번호로 입력 후 최종 제출합니다.

[첨부] 신청서 작성 예시

**1** 추천 신청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신청 <input type="checkbox"/> 재신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절약시설설치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증설 <input type="checkbox"/> 개체		
기본정보	업체명	해당사항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해당사항 입력		
	대표자명	해당사항 입력		기업구분	해당사항 입력		
	법인등록번호	해당사항 입력					
	업종	해당사항 입력		생산제품	해당사항 입력		
	사무소	주소 (우 : )	해당사항 입력				
		전화 ☎			FAX		
	투자지	주소 (우 : )	해당사항 입력				
		전화 ☎	해당사항 입력		FAX	해당사항 입력	
	설비담당	담당자명	해당사항 입력		담당자부서/직책	해당사항 입력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 ☎	해당사항 입력
			휴대전화 ☎	해당사항 입력			
대외담당		담당자명	해당사항 입력		담당자부서/직책	해당사항 입력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 ☎	해당사항 입력	
				휴대전화 ☎	해당사항 입력		
신청정보	시설명	설비명 ( 폐열회수 히트펌프 )			세부시설명 ( )		
	총사업기간	2019. 2. 1 ~ 2019. 2. 28					
	총사업비 (VAT제외)	80 백만원		추천신청액 (VAT제외)	80 백만원		
	계속사업 ○YES ●NO	차 수					
		연차별 사업비					
		추천번호					
기타 정책자금 사용여부 (장려금, 보조금 등)	●YES ○NO		용자취급은행	XX은행	XX지점		
	기관	해당사항 입력		☎ 해당사항 입력			
<p>위와 같이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추천을 신청합니다.</p> <p>20 . . .</p> <p><b>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b></p>							

## 2 시설 투자 계획서

사업계획서 (필요시 별도 작성후 첨부)

<p>사업 목적</p>	<p>당 목욕탕은 B-C 보일러를 사용하여 온수를 생산하고 있으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가격의 지속적 상승으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바, 목욕탕에서 버려지는 고온의 폐수에서 열을 회수하여 온수를 생산하는 폐열회수형히트펌프를 설치함으로써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의 녹색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함</p>
<p>사업추진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내용 : 기존의 보일러에서 생산하던 온수 생산을, 폐열회수형 히트펌프를 설치함으로써 버려지는 폐수에서 폐열을 회수하여 온수를 생산토록 함</li> <li>· 신규 설치시설 : 히트펌프, 증발기, 폐수탱크 등</li> <li>-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2.01 ~ 2019.2.11 : 배관설비 보수 및 수정작업</li> <li>· 2019.2.12 ~ 2019.2.22 : 기계 설치 작업</li> <li>· 2019.2.22 ~ 2019.2.28 : 기계 시운전 작업</li> </ul> </li> </ul>
<p>추진 성과 (기대 효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치전 보일러의 에너지사용량 및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보일러 에너지사용량(LNG) : 159 천Nm<sup>3</sup> [168 toe)</li> <li>② 보일러 도시가스 사용금액 : 135 백만원</li> </ul> </li> <li>2) 설치후 에너지사용량 및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히트펌프 설치후 에너지사용량 : 45 to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히트펌프 전력사용량 : 196 MWh [42 toe)</li> <li>- 기존 보일러 에너지사용량(LNG) : 3 천Nm<sup>3</sup> [3 toe)</li> </ul> </li> <li>② 히트펌프 설치후 에너지금액 : 18 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력 추가사용금액 : 16백만원</li> <li>- 기존 보일러 사용금액 : 2백만원</li> </ul> </li> </ul> </li> <li>3) 에너지절감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에너지절감량 : 123 toe/년</li> <li>② 에너지절감금액 : 117백만원</li> </ul> </li> </ol>

□ 신청설비 일반현황 (주설비 위주로 기재)

NO	설비명	모델명/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용도 및 기능
1	폐열회수형 히트펌프	해당사항 기재	17.61	RT	1	온수 생산
2	폐수탱크	해당사항 기재	12	ton	1	폐온수를 저장하여 증발기가 열교환할 수 있는 공간 확보
3	온수탱크	해당사항 기재	5	ton	1	생산된 온수 저장
4						

□ 시설의 주요특징

(※ 자금지원 대상설비 조건 충족 여부 및 설비 수량, 용량 선정 근거 기재)

▼ 추가 설명 사항(주요특징 및 용량산정기준)

1. 신청설비

- ① 히트펌프 : 17.61 RT × 1대
- ② 증발기(shell & tube) : 200,000 kcal/h × 1대
- ③ 폐수탱크 : 2000W\*3000L\*2000H(12ton)
- ④ 펌핑탱크 : 600W\*800L\*700H - SS401
- ⑤ 펌프1 : 380V\*950W\*25200L/hr - 폐수순환용
- ⑥ 펌프2 : 380V\*400W \*24000L/hr - 온수순환용
- ⑦ 펌프3 : 380V\*1.5kW \*0.44m<sup>3</sup>/min - 배수용
- ⑧ 헤어켓차 : 270D\*500H
- ⑨ 배관 : 동50A\*30M-온수용, 스텐100A-급수용, PVC100A(50A)\*VG1 - 폐수용

2. 용량산정 기준

- 이용객 월평균 300명
- 일일 필요열량 : 1,350,000 [kcal/day]
- 사용연료 : 전기보일러150 kW
- 일일 연료소비량 : 년평균 약 1,614 kW
- 일일 폐수량 : 45,000 L
- 폐수열 회수 온도차 : 15 ℃
- 히트펌프 발열량 : 154,800 [kcal/h]
- 일일 폐수회수열량 : 675,000 [kcal/day]
- 히트펌프 가동시간 : 10 시간
- 일일 히트펌프 생산량 : 약 1,548,000 kcal

### 3 절 감 효 과 산 출

기대효과산출

NO	설비현황			개선전 에너지 사용량				개선후 에너지사용량				기대효과				
	설비명	용량 단위	수량	에너지 종류	사용량 단위	석유 환산톤	에너지 사용금액 (백만원)	에너지 종류	사용량 단위	석유 환산톤	에너지 사용금액 (백만원)	에너지 절감량	절감 금액 (백만원)	에너지 절감률 (%)		
1	보일러	0.3	t/h	LNG	159	천m <sup>3</sup> /년	168	135	LNG	3	천m <sup>3</sup> /년	3	2	165	133	
2	히트 펌프	17.61	AT	전력	0	MWh/년	0	0	전력	196	MWh/년	42	16	-42	-16	
3																
4																
합계							168	135				45	18	123	117	

파일첨부		삭제
------	--	----

에너지절감의 기타기대효과

개 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절감으로 탄소배출량 감소</li> <li>원격 모니터링 제어시스템 이용으로 운영비 절감</li> <li>가스누설로부터 안전도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li> </ol>
세부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욕탕에서 버려지는 폐수(25~35℃)의 열량이 상당히 많아 폐열회수형히트펌프를 설치하여 이 열을 회수·재활용함으로써 123 toe/yr의 에너지절감하여 117백만원/yr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262 tCO<sub>2</sub>/yr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함</li> <li>컴퓨터를 통한 원격 모니터링 제어로 보일러 가동을 위한 기관실 인건비를 절감함(예상 30백만원/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컴퓨터를 통한 운전상황 상시 모니터링으로 PRE-MAINTENANCE가 가능하여 부수적인 운영비 절감 효과</li> </ul> </li> </ol>

## 4 신청 시설 명 세

계약내용 집계표

구분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서 금액 (VAT제외, 단위 : 천원)
계약 1	히트펌프 설치공사	해당사항(시공업체) 입력	80,000
계약 2			
합 계	-	-	80,000

종합내역서 ('상세내역서 등록' 작성 내용 자동집계)

구분	계약명	계약서 금액 (VAT제외, 단위 : 천원)	비고
① 재 료 비	계약 1	60,000	
	계약 2		
	소 계	60,000	
② 노 무 비	계약 1	10,000	
	계약 2		
	소 계	10,000	
③ 경 비	계약 1	5,000	
	계약 2		
	소 계	5,000	
④ 일반관리비	계약 1	3,000	
	계약 2		
	소 계	3,000	
⑤ 이 운	계약 1	2,000	
	계약 2		
	소 계	2,000	
⑥ 기 타	계약 1		
	계약 2		
	소 계		
합 계		80,000	

월별인출계획 (단위 : 천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40,000		40,000								80,000

※ 위 작성자료는 예시이며, 실제 신청서를 작성하실때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3. ESCO 투자사업 자금 신청 방법

- 신청화면 로그인 [ESCO/절약사업 공통으로 24P참고]
- 최초 신청 시 업체정보 입력 [ESCO/절약사업 공통으로 25P참고]
- 신청서 작성하기

#### 1) 추천신청서 기본정보 작성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재신청		<input type="radio"/> 성과배분계약 <input type="radio"/> 사업자과이년 신성과분계약 <input type="radio"/> 사용자과이년 신성과분계약 <input type="radio"/> 성과확정계약		<input type="radio"/> 신·중설 <input type="radio"/> 개체 (기존시설의 개조·보안·교체)	
---	--	--	--	---	--

**3 에너지 사용자 기본정보**

업체명	<input type="text"/>	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대표자명	<input type="text"/>	업체종류	<input type="radio"/> 중소기업 <input type="radio"/> 중견기업 <input type="radio"/> 대기업 <input type="radio"/> 공공기관 <input type="radio"/> 비영리기관 <input type="radio"/> 기타
법인등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업종	산업기타 (09) ▼	생산제품	<input type="text"/>
투자지주소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조회"/>		
투자지전화	선택 ▼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투자지fax	선택 ▼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담당자명	<input type="text"/>		
담당자email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직접입력"/> ▼	담당자전화	사무실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휴대전화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3 ESCO 업체 기본정보**

업체명	<input type="text"/>	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대표자명	<input type="text"/>	업체종류	<input type="radio"/> 대기업 <input type="radio"/> 중견기업 <input type="radio"/> 중소기업 <input type="radio"/> 기타
법인등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업종	선택 ▼		
사무소주소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조회"/>		
사무소전화	선택 ▼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사무소fax	선택 ▼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담당자명	<input type="text"/>		
담당자email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직접입력"/> ▼	담당자전화	사무실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휴대전화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① ESCO투자사업 중 '성과배분계약(사업자과이년성 성과배분계약)'은 '13년부터 자금지원대상사업 제외되었으며, '성과확정계약'은 '15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 ② 기존 ESCO사업은 노후설비를 개체하는 경우에만 지원하였으나, 절감효과가 검증된 절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증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 시설의 개체라 함은 동일 사업장에서 기존시설 또는 공정을 유사목적·유사기능의 향상된 시설 또는 공정으로 개조·보완·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추천신청액 작성란은 당해연도(2019년도) 사업기준으로 작성하시되, 계속사업인 경우에도 총 사업금액이 아닌 2019년도 사업분만 작성바랍니다.

## 2) 시설투자계획서

추천신청서
**시설투자계획서**
절감효과산출
추천시설명세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요약(필요시 범위 작성 후 첨부)**

사업목적 (정책과 연계성 등)	
사업추진내용 (사업의 타당성 등)	
추진성과 (기대효과, 보급효과 등)	
파일첨부	

→ 입력공간이 부족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첨부파일로 첨부  
 → ESCO자금 심사시 평가기준에 포함되므로 신중히 작성

**2. 시설의 주요 특징 및 용도(내용 추가 시 추가 배분 사유)**

→ 신청설비 일반현황(조성비 외주료 기입)

시설명	모델명/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용도 및 기능

→ 시설의 주요특징  
 → (X) 자금지원 대상 조건 충족 여부 및 수량, 용량 설정 근거 기재

① 사업목적은 기존 시설의 문제점을 근거로 하여 기재 바랍니다.

② 사업추진내용에는 설비 개체에 대한 내용, 사업 타당성 등 기재합니다.

③ 추진성과는 에너지절감량, 절감금액 등을 포함한 기대효과를 작성합니다.

④ 신청설비 일반현황을 작성시 각 항목을 계약서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설치완료 후 현장확인시 설비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 판단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바랍니다.

⑤ 시설의 주요특징은 자금지원 대상조건의 충족여부, 수량, 용량 등을 구체적인 근거기재. 특히 모델명, 제조사 등 입력 필히 입력바랍니다.

※ 항목별로 4,000자가 넘을 경우 신청서가 출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절감효과산출

> 사전점검
> 추진신청서
> 시설투자계획서
절감효과산출
> 신청시설명세
> 첨부서류

**3. 기대효과 산출**  
 → 신청시설에 입방한화(주설비 필수 기입)

전년도 에너지 사용량	연료	<input type="text"/>	Toe/년	전력	<input type="text"/>	MWh/년	합계	<input type="text"/>	Toe/년
-------------	----	----------------------	-------	----	----------------------	-------	----	----------------------	-------

구분		단위	사업전 후차	사업후
에너지사용량	연료(주1)	Toe/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전력	MWh/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계	Toe/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에너지 사용금액	연료	백만원/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전력	백만원/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계	백만원/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구분		에너지 절감량	에너지 절감금액
에너지절감량	연료	Toe/년	백만원/년
	전력	MWh/년	백만원/년
	계	Toe/년	백만원/년
목표(이론)절감율(%)			
투자비 회수기간(년)		에너지절감효과(Toe/억원)	
보통절감율(%)		<input type="text"/> %	성과보통기간(년)

**절감효과 파일첨부**

→ 절감효과 산출근거자료 파일은 평가에 참고되는 필수자료이므로 반드시 첨부바람.

주1) 연료: 연료원별로 작성  
 주2) 신청시설의 경우, 신청하는 에너지절감량 설비와 비교되는 보급이 일반화된 설비를 선정하여 사업 전 에너지사용량 등 산출. 단, 운전조건(설비가동시간 등)은 절약행위비와 동일하게 선정

**4. ESCO 평가기준 관련 자료 및 첨부(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입력)**

진단보고서	ESCO 또는 에너지진단기관이 진단한 진단보고서		
사후관리계획서	사후관리계획서(MRV계획서 포함) 자료첨부 (성과보증, 신 성과배분 계약은 MRV계획서 필수)		
기타첨부파일	교육실적 등 가점항목 자료 첨부 (대리장일괄우 업종)		

- ① toe 환산계수는 가장 최근에 공고된 기준 적용하여 작성합니다.  
 - 입력시 최근 공고기준으로 자동 산출될 수 있으며, 환산단위를 주의바랍니다.
- ② 입력수치를 계약서, 진단보고서, 에너지절감량확인서 등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 ③ 평가 주요사항인 파일을 필수 (절감효과, 진단보고서, MRV계획서, ESCO 교육실적 등)로 첨부바랍니다.

※ 항목별 2개 이상인 파일은 제출이 안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4) 진단보고서 작성방법

항목	작성방법
표지	· 표지에는 관리번호, 업종분류(대분류, 소분류), 진단일자, 진단인력, 보고서명, 업체명, 수행기관을 명시한다.
목차	· 목차는 최상위 단계는 로마자(I)로 작성하고, 차상위 단계는 아라비아숫자(1)로 작성한다.
I.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 일반현황은 업체명, 소재지, 업종, 담당자 등을 표로 작성한다.</li> <li>· 추진개요에는 진단수행 기술인력, 진단기간 등을 표로 작성한다.</li> <li>· 에너지사용 현황은 연료, 열, 전력의 종류별로 사용량, 금액, 단가, 합계, 피크전력 등을 표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월별, 설비별, 제품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차트 등을 활용한다.</li> <li>· 필요한 경우 제품 또는 항목별 에너지원단위 분석결과를 명시한다.</li> <li>· 설비현황은 설비별 용량, 대수, 형식 등을 표로 작성한다.</li> </ul>
II. 진단결과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단결과종합, 기대효과종합, 개선방안요약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li> <li>· 종합의견은 진단시 사업장의 현황, 진단 사항, 향후 방안 등을 간략히 요약한다.</li> <li>· 진단결과 요약에는 진단결과 예상되는 전체 절감량, 절감액, 투자비 등을 간략히 요약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대효과 종합은 개선안별 절감량, 절감율, 절감액, 투자비, 투자비 회수기간, 온실가스 저감량 등을 표로 작성한다.</li> <li>· 진단수행범위는 진단등급, 중점 진단대상, 진단대상 에너지사용량 등을 명시한다.</li> <li>· 진단보고서 작성기준에는 측정 및 데이터 판단의 기준, 단위 적용 기준, 경제성 분석 방법 등을 명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선방안 요약은 개선항목별로 현황, 개선방안, 효과를 간략히 요약하여 표로 작성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른 점검결과 기술지도 사항을 작성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단결과 개선을 위한 이행·투자계획서를 첨부한다</li> </ul>
III. 세부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비, 공정 등 개선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 운전현황, 개선방안, 기대효과를 작성한다.</li> <li>· 운전현황에는 현 운전상태, 문제점, 열수지 분석 등을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여 기술한다.</li> <li>· 개선방안은 구체적인 개선방법을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여 기술한다.</li> <li>· 기대효과에는 절감량, 절감액, 투자비, 회수기간 등을 표를 활용하여 요약하고, 각 산출근거를 식으로 명시한다.</li> </ul>
IV. 첨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II.세부개선사항」에 활용한 각종 설비의 열정산서 자료를 명시한다.</li> <li>· 현장진단시 확인한 에너지관리기준 점검표를 수록한다.</li> <li>· 진단결과 개선을 위한 이행·투자 계획서를 첨부한다</li> <li>· 신기술, 적용사례 등 진단과 관련한 기술자료를 수록한다.</li> </ul>

- ① 진단보고서 작성형식은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위의 표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② 진단보고서는 현장진단을 수행한 기술인력이 작성토록 하며, 진단일자 및 진단기간이 자금추천 신청일이나 계약서상의 계약일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③ 진단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설비에 대해서는 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5) 추천시설명세

- ① 시설명세서 입력시 하기 사항을 필히 확인하신 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추천신청서상 추천신청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입력하나, 시설명세서인 경우에는 천원단위로 입력하여 합산되므로 작성할 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인 사업내역서의 비목을 기준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주요시설에 대해서 필히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내역서와 별첨서류인 상세내역서 기재내용(수량, 설비명 등 정확히 기재)이 상이해서는 안 됩니다.
  - ※ 사업내역서의 별첨서류인 상세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추천담당자가 보완토록 요청할 수 있으므로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력된 일반관리비가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의 6%를 초과하여 계산된 경우 초과된 금액만큼 추천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입력된 이윤이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의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계상된 경우 초과된 금액만큼 추천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 비목에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계상된 금액이나, 추천대상 시설 품목이 아닌 경우 추천금액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한 계약서 조항 및 『사후관리계획서』에 명시된 사후 관리 및 하자보증 관리 이외의 관련법규에 의한 정기적인 검사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 제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진단비의 경우 제경비는 진단비내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하여야 되며, 초과하여 계상된 경우 초과된 금액만큼 추천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계속사업인 경우 2개년 이상을 각각 입력하여야 하므로 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시설명 등이 적절하게 입력되었는지 필히 재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월별인출계획														
단위 : 천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 ② 월별인출계획 천원단위로 정확히 작성하신 후, 합계된 금액이 당해연도 사업 신청금액과 동일한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 첨부서류

추진신청서
사업투자계획서
결집효과산출
추진시범영세
첨부서류

**1. 공통**

※ 에너지 사용자가 중소기업일 경우 <중소기업확인서>를 <기타>에 첨부 필수  
 (성광보통 계약 중 중소기업입찰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확인서를 첨부)

1. (필수) 계약서(10건까지 가능).
2. (필수) 상세내역집계표(4건까지 가능).
3. (필수) 사업자등록증(3건까지 가능).
4. 기타(10건까지 가능).

※ 사후관리계획서에 'MRV계획서'는 필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성과확정 계약은 제외)



> 변경신청서
변경신청시설명세
> 첨부서류

• 추천신청시설명세(계약상세명세 기준, 해당사항만 기재)

**1 계약내용 집계표** 등록 수정 삭제

선택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서금액(천원, VAT제외)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강 1호		0
<b>합계</b>			650,000

**2 기본정보**

계약명\*  계약서금액\*  천원

**3 상세정보**

계약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체주소\*  사무실전화\*

대표자명\*  FAX

담당자명\*  담당자이메일\*

부서/직책\*  휴대전화\*

**4 재료비** +행추가 -행삭제

선택	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2011년도금액(천원)	2012년도금액(천원)	금액합계
1	<input checked="" type="radio"/> *****	**	식	1	300	200	500
<b>합계</b>					300	200	500

④ 변경신청시설명세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계약건을 선택하고 [수정]을 클릭 하면 변경전 시설명세서가 나타납니다.

※ 변경신청시설명세는 [변경신청서] 단계에서 [추천시설내역변경]을 선택하여야 수정 가능합니다.

⑤ 변경전 시설명세서가 나타나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대하여 각 연도별로 변경되는 사업비를 각각 입력합니다.

⑥ 계속사업으로 변경하거나 시공업체,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서등을 반드시 추가 첨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에 변경된 파일을 추가 첨부하는 경우, 파일명에 '(변경)'이라 기재하고, 기존 첨부파일은 삭제하지 않습니다.

## 5. 계속사업 신청 방법

계속사업으로 추천받은 사업에 대하여 2차년도 또는 3차년도에 발생하는 사업비를 추천 받기 위해서는 각 연도마다 계속사업신청을 해야 합니다. 2차년도 이후에 신청한 계속사업은 원칙상 비평가 대상이지만 총 사업비(추천대상금액 기준)가 4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사업비의 30%이상 증감되는 등 중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금추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 될 수 있습니다.

### □ 계속사업 신청하기

HOME > 마이페이지 > 계속사업신청

회원정보수정

---

사업신청

---

진행현황

---

변경신청

---

포기신청

• 전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신청하신 사업을 선택하고 신청합니다.

계속사업신청
인쇄하기

선택	신청일자	추천일자	신청구분	시설명	진행상태	추천번호	평가결과/점수	계속사업 신청여부	담당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사업신청 >

- ①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홈페이지(<http://enegry.or.kr/jagum>)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계속사업신청을 클릭하면 신청이력이 나타납니다.
- ② 계속사업 신청을 원하는 사업을 선택후, 계속사업신청을 클릭합니다.
  - ※ 추천서가 발급된 이후 은행변경 또는 계속사업변경 등으로 추천서가 변경된 경우 최종 발급된 추천서를 선택하고 계속사업신청을 합니다.
- ③ 추천신청서가 나타나면 전년도에 발급받은 추천번호를 입력합니다.
- ④ 임시저장을 하거나 다음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신청서 작성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추진신청서 > 시공업체계서 > 밀감요과산출 > 추진시설명세 > **첨부서류**

**공통**

1. (필수) 계약서(갑자 및 일반계약조건, ESCO사업의 경우 계약서 전체(붙임서류 포함))(10건까지 가능).

계약서, 일반 계약 및 설치공사.한신도일리.pdf
 첨부  
삭제

2. (필수) 상세내역집계표(10건까지 가능).

상세내역서, 일반 계약 및 설치공사.pdf
 첨부  
삭제

3. (필수) 선정자 사업자등록증(계명일 경우 주면등록등본, ESCO사업의 경우 사용자 및 ESCO 모두 첨부)(2건까지 가능).

사업자등록증.pdf
 첨부  
삭제

4. 기타(10건까지 가능).

첨부  
삭제

**사업별**

1.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일 경우 필수)(2건까지 가능).

첨부  
삭제

2. 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권리업체지정 산정근거 자료(그린크레딧사업 제외)(10건까지 가능).

첨부  
삭제

**설비별**

★ 시설의 개체 및 공정개선 사업의 경우 동일 경우 사업건, 후 도면을 기타에 첨부

1. 감사대상기기 : 감사증(5건까지 가능).

설치감사증.pdf
 첨부  
삭제

2. 배관사대상기기 - 보일러 명판, 구입당시 계약서, 고장자산명세서 등 역(5건까지 가능).

첨부  
삭제

3. (필수) 보일러 설치도면(5건까지 가능).

보일러 도면.pdf
 첨부  
삭제

4. 설치보조금 계산 근거(자녹스바나 보조금 등에 해당되는 경우)(10건까지 가능).

첨부  
삭제

5. 기타(10건까지 가능).

첨부  
삭제

→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만 신청서가 최종 제출되며, 신청서제출은 근무시간(09:00 ~ 18:00)내에만 가능합니다.

신청서제출 닫기

④ 마지막 **[첨부서류]** 화면으로 넘어가서 2019년에 새로 발급받으신 중소기업 확인서 및 시공업체확인서를 첨부하신 후, 하단의 신청서제출을 선택하면 **[계속사업]** 신청이 완료됩니다.

※ 전년도에 첨부한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만 새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6. 추천포기 신청 방법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어 최초인출시한(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내 자금인출(추천자금의 20%)을 못하는 경우 추천 포기신청을 합니다. 포기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은 추천취소가 되며 재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추천포기신청을 한 사업은 다음연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 추천포기 신청하기

HOME > 마이페이지 > 포기신청

회원정보수정

사업신청

진행현황

변경신청

포기신청

계속사업신청

선택 신청일자 추천일자 신청구분 사업명 진행상태 추천번호 평가결과/ 경수 계속사업 신청여부 담당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포기신청

인쇄하기

! • 추천받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추천포기신청을 해야합니다.  
• 추천을 포기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 할 수있으며, 감점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홈페이지(<http://energy.or.kr/jagum>)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포기신청을 클릭합니다.
- 추천서를 발급받은 목록 중 추천을 취소하고 싶은 사업을 선택 후 [포기신청]을 클릭합니다.

### 3. 유의사항

- 첨부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사용 유의사항 확인서"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통 추천서는 해당 시설의 품질, 성과는 무관하며, 가동 후 에너지절감량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당해년도 추천된 자금을 최종 인출하는 경우 인출 희망일 일주일전까지 사업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금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인출금액이 추천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인출하여야 합니다.(※기한 내 미인출 시 추천 취소)
- 추천포기한 사업은 당해연도에 재신청하실 수 없으며, 추천취소된 사업은 다음연도까지 재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위 자금추천시절은 설치완료일(최종자금 인출일)이후 현장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 대상자를 추천합니다.(담당: 김여은 전화: 031-260-4354)

2018년 10월 10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신한은행장 귀하

추천포기신청 추천공문 추천시설명서 유의사항확인서

인쇄

② 또는 추천서 화면 하단의 [추천포기신청]을 선택합니다.

추천포기신청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추천포기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출산		전화번호
	(우) -----		
투자소재지	출산		전화번호
	(우) -----		
신청시설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추천번호	
		추천일자	2016-12-20
		추천금액	백만원
포기사유			
<input type="radio"/> 은행 대출 불가(담보부족 등의 사유로) <input checked="" type="radio"/> 사업연기 <input type="radio"/> 시설의 설치 포기 <input type="radio"/> 기타			
2017년 사업으로 재진행 <span style="float: right;">^</span> <span style="float: right;">v</span>			
0/200byte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 추천을 포기 신청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신청인(대표자) :
<b>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b>			

신청서제출

③ 포기사유를 선택하고 [신청서 제출]을 클릭하면 포기신청이 완료됩니다.

## 7. 신청시 유의사항(공통)

### □ 신청시 유의사항

- ① 계약일자, 설치기간, 사업기간 등 확인 후 입력합니다.
- ②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성명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 ③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를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④ 투자시설 설치장소와 에너지사용자의 사업자등록증상 장소 일치하여야 합니다.
- ⑤ 필수 제출서류 필히 재확인바랍니다.
- ⑥ 설계도면, 시설배치도 및 사업전·후 시설현황을 구체적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자금 인출시 유의사항

- ① 자금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천금액의 20% 이상을 인출하여야 하며, 연말까지는 추천금액을 전액 인출하여야 합니다.
- ② 자금추천 후 최초 자금신청 내용과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추천변경신청 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③ 당해년도 추천된 자금을 최종 인출하는 경우는 '사업수행보고서'를 인출 전에 해당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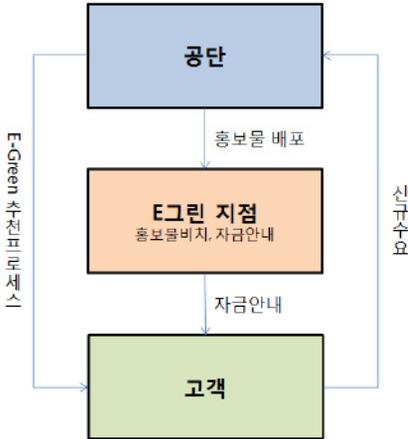
### □ 은행 및 채무자 변경절차

- ① 추천서 발급 후 인출이력이 없는 경우는 온라인으로 추천변경 신청합니다.
- ② 추천서 발급 후 1차 인출이 진행되었거나 설비설치 완료 후 금융기관을 변경 할 경우 금융기관간 차입금 인수인계 계약서를 첨부하여 공단으로 승인 요청 하여야 합니다.
- ③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대출 받은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존 채무자의 상호·명칭 등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즉시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자금사용자(채무자) 변경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8. E(energy)-Green 지점 운영 안내

### □ E-Green 지점 개요



- 타깃지역별 E-Green 지점을 선정하여 자금 홍보 거점으로 운영
  - 전국 14개 행정지역, 12개 은행 총 108개 지점운영 中
  - 에너지융합리화자금 지원 안내 홍보물 비치 및 합리화자금 관련 대출상담 진행
- E-Green 지점을 통해 先 대출상담 완료 후 자금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추천프로세스에 따라 추천 진행

### □ E-Green 추천 프로세스

- E-Green 지점을 통하여 대출상담이 완료된 기업에 제공하는 별도의 추천 프로세스로 해당 지점이 E-Green 추천건임을 공단에 알린 경우 적용 가능
- E-Green 추천 프로세스 적용 시 상시적으로 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서 생략, 처리시간 단축 혜택 부여

※ 지역별 E-Green 지점 현황은 “합리화자금 홈페이지([www.energy.or.kr/jagum](http://www.energy.or.kr/jagum)) - 지원사업 - E-Green 지점 안내”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2019년도 자금지원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2호)

2019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및 자금지원 세부기준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jagum](http://www.energy.or.kr/jagum))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2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하는 「2019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2019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그 밖에 에너지 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의 신청·대출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대상기관”이라 함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추천”이라 함은 공단이 자금 실수요자에게 이 지침의 규정에 따른 자금 지원조건 및 대출범위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출”이라 함은 공단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공단과 대역약정을 체결한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협은행,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등(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융자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대여”라 함은 공단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을 말한다.
5. “대출승인”이라 함은 금융기관(또는 공단)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대출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소요자금”이라 함은 융자지원 대상시설 설치 또는 사업에 투자되는 자금을 말한다.
7.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8.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을 말한다.
9.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0.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11.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이하 “ESCO”라 한다)이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12. “계속사업”이라 함은 동일사업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계속 하여 진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13. “시설의 개체”라 함은 동일 사업장에서 기존시설 또는 공정을 유사목적·유사기능의 향상된 시설 또는 공정으로 개조·보완·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업장 이전에 따라 폐기하는 기존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장에 대체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개체로 본다.
14. “사업의 착수일”이라 함은 계약일자(외국으로부터 주요설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일자 또는 최초 송금일자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를 말한다. 다만, 복합공정에서 전체계약내용 중 지원 대상 시설에 대한 착공일이 계약일자와 다른 경우는 착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15. “목적외 사용”이라 함은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제 2 장 자금지원 대상 및 조건

제4조(지원대상자) ①자금지원대상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및 중소·중견기업을 에너지사용자로하는 대기업ESCO로 한다. 단, 대기업ESCO는 ESCO투자사업에 한한다.

②세부사업별 자금지원대상자는 아래 각 호와 같다.

세 부 사 업 명		자 금 지 원 대 상 자
1. ESCO 투자사업		○에너지사용자와 성과확정계약 또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ESCO 또는 ESCO와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용자
2. 절약시설 설치사업	에너지절약 설치사업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2의 시설 설치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생산시설 설치사업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고효율제품 등을 생산하는 자(중소기업에 한함)
	수요관리설비설치사업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수요관리설비를 설치하는 자

제5조(지원대상사업) 자금지원대상사업은 아래 각 호와 같다.

세 부 사 업 명		대 상 사 업
1. ESCO 투자사업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1에 해당하는 사업 - 다만, 성과확정계약은 [별표3]의 대상사업에 한함
2. 절약시설 설치사업	에너지절약 설치사업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2의 가~자 목에 해당하는 사업
	생산시설 설치사업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2의 차 목에 해당하는 사업
	수요관리설비설치사업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2의 카 목 해당하는 사업

제6조(지원규모 및 조건) ①이 자금의 지원규모는 2,800억원이다.

②지원조건은 아래 각 호와 같다.

세 부 사 업 명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대출 기간	이자율
1. ESCO 투자사업		150억원 이내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단월 개·보수 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에너지 및 자 원사업 특별회 계 운용요령」 에 따름
2. 절약시설 설치사업	에너지절약 설치사업	15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생산시설 설치사업	10억원 이내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50억원 이내		
합 계				

주1) 위 표의 대출기간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의 규정에 따른다.

주2) 지원규모는 공단이 자금추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금지원 세부내역별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주3) ESCO투자사업의 이자율 적용은 성과확정 및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은 ESCO,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은 에너지사용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7조(지원범위) ①자금지원의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 등은 제외한다.

②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100% 이내로 한다.

### 제 3 장 자금신청 및 추천

제8조(자금신청) ①자금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 전에 자금 추천 신청시설의 품질, 성능, 안전, 시공업체 선정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단에서 정한 자금추천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자금신청 최소 신청금액은 2천만원으로 하고, 자금추천은 1백만원 단위로 한다. 다만, ESCO투자사업에서 단열 개·보수사업의 최소 신청금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③공단은 특정 자금지원 대상설비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제품의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자금추천 신청의 접수 등 세부사항은 공단에서 정한다.

제9조(추천심사) 공단은 자금추천을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에너지절감 효과 등을 심사하여 자금추천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전년도에 추천받은 계속사업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 설치사업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사업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 제2항에 근거한 에너지진단결과에 따라 수행하는 시설, 공정 등을 개체 또는 개선하는 것으로서 진단 완료 후 2년이내에 실시하는 사업(공정별 또는 설비별 에너지절감효과가 5%이상인 경우에 한함)
5.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6.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사업
7. 자금추천 대상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제10조(추천심사기준)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업별 자금추천 신청 및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지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 지원확대, ESCO산업 활성화, ICT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신시장 창출 등 정책적인 지원 필요성 등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추천범위) ①공단은 당해연도 개시일 이후(전년도 4사분기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전년도에 추천 받은 계속사업은 당해연도 이전에 착수된 사업일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할 수 있다.

2.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당해연도 개시일 이전에 착수된 사업에 대해서도 당해연도에 다시 추천할 수 있다.
- ②계속사업에 대한 자금추천은 추천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내까지만 인정한다.
- ③공단은 추천취소, 추천포기 등을 감안하여 자금지원 예산규모의 40% 범위 내에서 초과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추천통보) 공단은 제9조에 따라 자금추천을 하는 경우 별도로 공단이 정하는 기한 내에 자금신청자 및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추천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추천취소 등) ①공단은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반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해당사업 시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자금이 이미 지원된 사업은 해당 자금을 회수 할 수 있으며, 해당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자금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자금지원과 관련하여 민원 발생, 자금사용 위반 등으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때에는 해당업체, 특정설비 등에 대하여 공단은 자금추천심사를 잠정적으로 보류할 수 있다.

제14조(변경신청) 공단으로부터 자금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금액 등 추천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추천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0월이후에는 당해연도 추천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중소·중견기업 확인) ①자금신청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중소기업으로 본다.

②자금신청자가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자금추천위원회) ①자금추천심사 등 자금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추천위원회를 둔다.

②자금추천 대상사업은 제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금추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금추천을 한다. 다만, 총사업비(추천대상금액 기준)가 20억원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의 추천심사기준에 따라 자금추천위원의 온라인 평가를 거쳐 자금추천을 할 수 있다.

③전년도에 추천받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추천대상금액 기준)가 4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사업비의 30%이상 증감 등 사업내용에 중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금추천할 수 있다.

④동 위원회 산하에 자금지원 대상설비의 검토를 위한 설비 조정심의위원회를,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등을 위해 자체성과평가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⑤각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제17조(대상시설의 공모) 공단은 자금지원 대상시설 및 성과확정계약 자금 지원 대상시설 공모를 연중 실시하여, 매년 6월 및 11월경 관련 전문가 등의 검토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일정한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자금지원 대상시설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설비는 동 지침 개정 전이라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대상시설의 조정) ①자금지원 대상시설 및 성과확정계약 자금지원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설비조정심의위원회의 관련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매년 정기적으로 대상시설에서 제외하거나 대상시설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외 또는 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1개월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원발생 등으로 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특정설비 및 특정업체의 제품 또는 시공자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자금지원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 제 4 장 대출승인 및 대출금의 지급

제19조(대출신청) 공단의 자금추천을 받은 자는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공단에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대출승인) ①금융기관(또는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승인을 하여야 하며(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동기간이 경과할 경우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공단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대출승인일은 당해연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금융기관은 자금지원사업에 대한 대출승인사항(승인일, 승인금액)을 최초 자금인출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대출기한) 공단으로부터 추천(또는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추천(또는 대출승인)받은 자금을 당해연도에 인출하여야 하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인출할 수 없다. 다만, 금융기관 또는 공단의 대출승인이 당해연도 내에 이루어지고 연도 내에 자금을 인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월하여 익년도 2월말까지 인출할 수 있다.

제22조(대출금의 지급) 금융기관(또는 공단)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자금사용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자금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대출방법) ①금융기관(또는 공단)이 시설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의 설치(설치장소, 시설의 사양 등) 또는 제작현황이나 용역제공 등에 대한 일치 여부를 현지조사와 관련서류(세금계산서 등)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자금지원비율을 감안하여 자금을 지급한다. 다만, 기성고를 인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자금 지급시 추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자금사용자가 재화 또는

- 용역의 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기성고로 인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총사업비(전체 추천대상금액 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해당시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수입어음 결제 예정액을 기성고로 인정하여 수입어음 결제일에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한도금액 범위내에서 일부만 자금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자금지원비율과 관계없이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추천금액 중 잔여 10%에 해당되는 자금은 제외한다.
  4. 공단이 직접 대출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기성고 조사는 세금계산서, 선하증권 등 관련 자료의 확인으로 기성고 조사를 갈음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대출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대출금을 지급한다.
  5. ESCO투자사업의 기성고 확인은 현지조사 및 ESCO투자사업의 계약당사자인 에너지사용자와 ESCO간의 관련서류(세금계산서 등)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에너지사용자와 ESCO간의 관련서류(세금계산서 등)를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ESCO의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대해서는 재료비, 노무비의 기성고 비율과 같은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자금사용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또는 용역)의 이행 정도와 해당 자금추천서에 기재된 소요자금에 대한 집행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세금계산서 등)를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대출관리) ①자금사용자는 당해연도 자금을 최종 인출할 경우에는 최종자금 인출 희망일전까지 사업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은 사업수행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출받은 사업수행보고서를 확인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금사용자에 대하여 향후 자금추천 심사를 보류하거나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공단 또는 금융기관은 이 지침에 의한 자금의 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25조(자금추천·대출승인 취소) ①공단으로부터 추천(또는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자금추천일(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된다. 이 경우 최초자금 인출일은 첫번째 대출금이 공단으로부터 대여된 날을 말하며, 이때 3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까지를 최초인출시한으로 본다.

②공단은 자금추천일(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천금액의 20% 이상을 인출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③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 또는 금융기관(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당해연도 내에 인출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미인출 잔액에 대하여 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자동취소 된다.

④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취소된 사업은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최초자금 인출시한 완료일 이전에 공단에 추천의 포기를 통보한 경우는 다음연도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6조(취소 제외) 공단은 제25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의 취소, 자금지원 제외의 사유가 금융기관의 귀책 등 불가피한 경우로 인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대출상황 보고) 공단은 이 지침에 의한 대출상황을 익월 1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에서 정한 회계사무의 위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 5 장 사후관리

제28조(사후관리) ①금융기관(공단에서 직접 대출한 경우는 공단)은 대출 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대출금이 동 지침에 위반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현지조사·확인 등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된 때에는 관련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대출금 중 해당되는 원리금을 공단에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공단에서 직접 대출한 경우는 공단이 회수함)

1. 자금추천된 사업이 취소 또는 중단된 때
2. 자금사용자 또는 해당사업이 자금추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때
3. ESCO가 제30조에서 정한 기한내에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지 않는 때

③금융기관은 대출금이 동 지침을 위반하여 지원자금을 추천된 목적외 사용한 때에는 관련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대출금 중 위반에 해당되는 원리금을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공단에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29조(위반시 조치) ①금융기관은 제28조 제3항에 해당되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대출일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자금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목적외 사용금액, 사용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지원 제한을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다.

③공단은 자금지원설비를 시공하는 자(ESCO투자사업의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의 경우에는 ESCO)가 동 지침에 위반하는 사항의 발생에 관련된 경우에는 [별표2] 자금추천시설 시공업체의 위반사항에 관한 조치기준에 따라 해당 시공업체가 참여하는 자금추천신청에 대하여 2년 이내에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공단은 제31조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28조에 해당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또는 해당 사업자에게 20일 이내의 의견제출 기간을 준 후 금융기관에 대출금의 상환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금융기관은 제28조 제2항의 경우에 상환결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 제2항의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출금 상환을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⑥금융기관은 제5항의 상환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원리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공단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상환완료시까지 자금추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0조(상환) ESCO투자사업 중 성과확정계약 및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 계약의 경우 ESCO와 에너지사용자간에 약정한 투자비상환기간이 종료되면 ESCO는 종료일의 다음분기 말일까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금 잔액을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

제31조(실태조사) ①공단은 지원한 자금이 동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이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민원·환경영향 우려 등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금추천 단계 또는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금대출 업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 또는 사업자(에너지사용자 포함)는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 또는 사업자(에너지사용자 포함)가 공단의 실태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단은 지원된 자금의 회수, 자금추천대상(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대출취급)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성과평가) ①공단은 자금지원을 받아 투자가 완료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이때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성과측정·검증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사업성과 평가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성과산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확인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자금추천을 제한할 수 있다.

③공단은 자체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매년 8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6 장 보칙

제33조(변경운용) 공단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동 지침을 변경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침 개정시까지 한시적으로 동 지침을 변경 운용할 수 있다.

제34조(자금지원 세부기준) 공단은 동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집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부 칙

1. 이 지침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이미 추천된 계속사업의 대상시설, 지원대상자 및 지원조건은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3.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자금이 소진되어 추천받은 사업 중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업(금융기관을 통하여 공단에 대여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금년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대출액은 이 지침이 정한 금년도의 대출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

구 분	자금지원 세부내역	비 고
1. ESCO 투자사업		
	<p>ESCO 투자사업(공통사항)</p> <p>ESCO 또는 에너지융합리화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이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한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라 아래 ①~④의 시설 설치를 ESCO 또는 ESCO와 사용자파이낸싱성과 보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 사용자가 실시하는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범위 : 해당시설, 계측장비, 소프트웨어, 진단비용, 사후관리비(MRV 포함),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과 연계되어 에너지사용자가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외자설비 등</li> <li>·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내역 또는 하자보수비는 제외</li> <li>- 지원제외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절약시설 설치사업 이외의 전기를 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냉·난방기 및 일반 사무·가전기기</li> <li>·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에너지절감 효과를 인정하는 시험성적서(최근 3년 이내)가 없는 전기절전기 및 신개발 제품</li> <li>·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설비, 정부정책에 적합하지 않은 설비, 기타 ESCO 투자사업으로 실시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설비</li> <li>· 공동주택(다만, 영구임대주택은 제외)에서 개별 난방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li> <li>·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LED 관련 기자재</li> <li>·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는 제외(다만, 기 설치된 소각로에서 폐열을 이용할 경우에는 소각로를 제외한 폐열이용시설은 지원)</li> </ul> </li> </ul>

구 분	자금지원 세부내역	비 고
	①절약시설 설치사업  ②단열 개·보수사업  ③온실가스배출감축설비 설치사업  ④기타 에너지효율 향상사업	- [별표1]의 제2의 가~자, 카 목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해당 하는 건축물이 준공된지 10년이 경과하여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단열재나 기밀성 창호 또는 기밀성 문으로 개체하는 사업  · 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따름  -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에너지진단 결과 공정별 또는 설비별 온실가스감축효과가 5% 이상 가능하다고 평가한 설비  -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에너지 절약 시설로 개체하는 사업으로 에너지진단 결과 공정별 또는 설비별 에너지절감 효과가 5% 이상 가능하다고 평가한 시설
<b>2. 절약시설 설치사업</b>		
가. 정책사업	절약시설 설치사업(공통사항)  ⑤ICT(정보통신기술)활용 에너지 관리시스템(EMS)	- 절약시설 설치사업은 해당 사업 추진을 통하여 에너지절감 효과가 5%이상 (다만, 사업 성격상 에너지절감 효과 산출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 가능할 것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는 제외 (다만, 기 설치된 소각로에서 폐열을 이용할 경우에는 소각로를 제외한 폐열이용 시설은 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계측장비, 통신기기 등의 ICT기술을 활용하여 건물(BEMS) 또는 공장(FEMS)등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업

구 분	자금지원 세부내역	비 고
	⑥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 사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사업 ·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모니터링 및 측정 시스템(소프트웨어 포함)
	⑦에너지진단결과 개선사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에너지진단 결과를 수행하는 사업 · 진단결과 에너지절감효과가 5% 이상 가능한 사업으로 진단 완료 후 4년 이내 실시하는 사업 · 대·중소기업 동반녹색성장 협력사업 수행결과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도 진단결과와 동일하게 지원
	⑧고효율에너지기자재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인증 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 다만,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LED 관련 기자재는 제외
	⑨집단에너지사업자 상호간 또는 동일한 집단에너지사업자 내 사업장 상호간 열네트워크 구축사업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른 열수송시설(열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열교환기는 포함)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를 완료한 시설에 한함
	⑩집단에너지사업자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른 열수송시설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를 완료하고, 준공된지 20년이 경과한 시설에 한함
	⑪기술개발 실용화 설비	- 새로이 개발된 에너지절약기술을 이용한 설비로 공단 이사장이 시범보급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설비

구 분	자금지원 세부내역	비 고
나. 보일러 및 요로 설비	⑫ 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 투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설비로 현재 평균적인 설비에 비해 에너지절약효과가 10%이상 가능한 것</li> <li>· 다만, 소모품, 건축물기자재, 가전제품 등은 제외</li> <li>-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 또는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에너지절감효과 또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5%이상인 사업</li> <li>· 다만, 발전사업자의 발전계통(보일러, 터빈, 발전기) 부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li> </ul>
	⑬ 열병합발전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이용하는 에너지 시스템</li> <li>· 다만,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원시설은 제외</li> </ul>
	⑭ 노후 보일러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후 7년이 경과한 보일러의 교체사업</li> <li>· 교체 후 설비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제31조의6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에 한함</li> <li>· 기존 보일러 용량의 2배를 상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대이상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도 가능</li> </ul>
	⑮ 폐열이용 보일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열을 이용하여 증기 및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li> </ul>

구 분	자금지원 세부내역	비 고
	⑩보일러 수처리시설 또는 음향 처리시설	- 보일러내의 스케일 생성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인증제품에 한함
	⑪가스 온수기	- 가스를 열원으로 순간온수를 생산하는 설비 · 효율관리기자재 1등급 제품에 한함
	⑫축열기(Accumulator)	- 부하변동 안정화를 위한 축열 장치
	⑬유리 화학강화로	- 화학적 처리를 통해 유리의 강도를 강화하는 장치
	⑭에너지절약형 유리용해로	- 용해실과 작업실을 분리하여 용해효율을 향상시킨 용해로 · Submarine 또는 Deep Throat 방식이며, 축열구조를 갖춘 것
	⑮폐열회수형 용해로	- 배가스 폐열을 회수하는 용해 장치
	⑯전기 유도용해로	- 전기유도현상을 이용하여 금속물체를 용해하는 장치
	⑰고주파 유도 가열장치	- 전기유도현상을 이용하여 금속물체를 가열하는 장치
	⑱에너지절약형 가열로 및 열처리로	- 가스 또는 유류를 열원으로 피가열물체를 가열 및 열처리하는 장치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것 · 배가스 폐열을 회수하는 설비를 갖춘 것 · 공연비 및 로내온도 제어기능을 갖춘 것

구 분	자금지원 세부내역	비 고
다. 폐열이 용설비	㉔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	- 진공상태에서 고압의 전압을 인가하여 피처리물 표면에 질소이온을 침투시켜 표면을 경화하는 열처리 장치
	㉕전기 침적식 보온로	- 가열장치가 용탕 안에서 직접 가열하는 보온로
	㉖고온 도가니 전기로	- 내화물로 둘러싸인 도가니를 전기로 가열하는 장치
	㉗롤러허스(RollerHearth) 킬른	- 대차를 사용하지 않고 소성품을 롤러에 의해 운반하는 킬른
	㉘폐열회수 이용설비	- 폐열을 회수하여 가열원 또는 에너지 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 열풍, 온수, 증기, 동력 등을 생산하는 장치에 한함
	㉙폐열회수형 버너	- 축열식 열교환기가 내장된 축열식 버너 또는 간접 가열식 Radiation Tube 버너로서 Recuperator가 부착된 것
	㉚폐열 또는 폐압력 이용 발전 장치	- 폐열 또는 폐압력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장치
	㉛공정 부생가스 이용장치	- 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부생가스를 이용하는 장치 · 가연성 부생가스의 소각장치와 소각 발생열을 이용하는 장치가 동시에 설치된 것
	㉜폐열이송설비	- 공정폐열, 폐가스 등 폐열을 회수하여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거나 받기 위한 설비
㉝축열식 연소장치(R.T.O)	- 축열재를 통해 폐열을 회수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연소하는 장치	

구 분	자금지원 세부내역	비 고
라. 동력설비	㉔ 폐열회수형 촉매 연소장치	- 촉매(백금, 팔라듐 등)를 이용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연소하고 연소폐열을 회수하여 이용하는 장치
	㉕ 히트펌프	- 공정폐열, 폐수열 등을 회수하여 이용하는 폐열회수형 히트펌프  - 또는 기존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을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으로 등록된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실외기)의 조합으로 교체하는 사업
	㉖ 응축수 회수시설	- 응축수를 회수하여 보일러급수 등으로 이용하는 시설
	㉗ 증기 재압축장치	- 저압의 증기를 압축하여 고압의 증기로 이용하기 위한 장치
	㉘ 인버터	- 부하에 따라 전압 및 주파수를 가변하여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는 장치  · 설치용량(kW)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대상인 경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함
	㉙ 모터전력부하 제어장치	- 부하전류를 분석하는 전력분석장치가 부착되어 인버터를 제어하여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는 장치  · 인버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에 한함
	㉚ 유체커플링	- 유체를 매개체로 하여 입력축의 회전을 출력축에 전달하는 장치
	㉛ 마그네틱 드라이브 커플링	- 부하변동에 따라 영구자석(마그네틱)과 도체의 거리를 조정하여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는 장치
	㉜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 인버터 제어에 의해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장치

구 분	자금지원 세부내역	비 고
마.염색 및 제지설비	④④고온 응축수 펌프	- 100℃이상의 고온 응축수를 이송하는 펌프
	④⑤증기차압 구동식 동력장치	- 고압증기의 차압을 이용하여 동력설비를 구동하는 장치
	④⑥삼상유도전동기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거 삼상유도전동기로 등록된 기자재
	④⑦고효율 변압기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거 고효율변압기로 등록된 변압기
	④⑧에너지절약형 사출성형기	- 서보모터 제어형 사출성형기
	④⑨UV LED 노광기	- LED를 UV광원으로 사용하여 인쇄회로기판 등에 미세회로(패턴)을 형성하는 장비
	⑤⑩회생제동장치	- 동력설비 동작시에 낭비되는 전력을 입력으로 받아서 전력을 다시 생산하는 설비 · 한국전력에서 고효율기기로 승인한 제품에 한함
	⑤⑪인버터제어형 진공펌프	- 인버터 제어에 의해 부하에 따라 전동기 회전수를 조절하는 진공펌프
	⑤⑫밀폐식 연속 수세장치	- 밀폐구조로 증기의 누설을 방지하는 원단 수세장치 · 수세온도가 자동조절 되는 것
	⑤⑬정련·표백 연속처리 장치	- 정련, 표백을 연속처리하는 구조로 중간에 수세조가 없는 것
⑤⑭저욕비 염색기	- 피염물에 대한 염액의 중량비가 낮은 염색기 · 포염은 1:5이하, 사염은 1:6이하인 것	

구 분	자금지원 세부내역	비 고
	⑤⑤자동 사염 건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수, 건조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사염 건조기</li> <li>· 블로워로 열풍을 순환하여 건조하고, 세퍼레이터가 설치된 것</li> </ul>
	⑤⑥히트셋팅기(T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풍을 공급하여 원단의 주름을 방지하고 직물의 형태, 색상을 고정시키는 장치</li> <li>· 내부온도에 따라 가열장치의 자동제어가 가능하고 배기열습도를 감지하여 배기량 자동조절이 가능한 것</li> </ul>
	⑤⑦무장력 연속 스티머(증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날염된 원단에 증기를 공급하여 장력을 가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염료를 고착시키는 장치</li> </ul>
	⑤⑧압착탈수장치(Shoe pr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개의 롤러와 한 개의 슈(Shoe)를 사용하여 지필의 함수율을 낮추는 장치</li> </ul>
	⑤⑨초지건조기의 밀폐 후드 및 배열회수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밀폐형 구조로 배열을 회수하는 장치</li> </ul>
바.증발 및 농축설비	⑥⑩증기재압축식 증발농축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발농축기에서 증발된 증기를 압축하여 증발열원으로 재이용하는 장치</li> </ul>
	⑥⑪증기 재이용 다중효용 농축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발관에서 발생한 수증기를 저압의 다음 증발관의 열원으로 사용하는 장치</li> <li>· 3중 효용관 이상인 것</li> </ul>
	⑥⑫이온교환막 전해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액에 전류를 통하여 양이온과 음이온을 각각 양극과 음극위에서 방전시켜 각 전극에서 성분을 추출하는 장치</li> </ul>
사.건조설비	⑥⑬회전식 디스크 건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통증기자켓용기의 내부중공 회전축에 원통 디스크를 부착하여 피건조물을 간접 건조하는 것</li> </ul>
	⑥⑭적외선 건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외선을 이용하여 건조하는 장치</li> </ul>

구 분	자금지원 세부내역	비 고
아.건물에너지 절약 및 공조 설비	⑥5 적외선 가열건조 도장부스	- 적외선을 이용하여 가열건조하는 도장부스
	⑥6 직접가열 열풍식 도장부스	- LNG, LPG를 열원으로 피가열체를 직접 가열하는 것
	⑥7 인쇄용 건조장치	- 코팅 또는 인쇄시 원재료에 도포된 도료를 열풍으로 건조시키는 장치 ·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하여 자체열원으로 재사용할 것
	⑥8 에너지절약형 공기조화시스템	- 공기를 정화, 냉각, 가열, 가습하여 실내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 · 배기열 회수장치, 정풍량특성 댐퍼, 실내 온·습도 자동제어시스템을 구비한 것
	⑥9 제습 공조장치	- 내부에 제습기능을 내장한 공조장치 · 제습장치로 공기를 제습하고 폐열로 제습장치를 재생시키는 것
	⑦0 건물자동화 제어장치	- 건물 에너지사용설비의 제어 기능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장치 · 냉·난방제어, 조명제어, 공조 제어를 통합하여 자동운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⑦1 원적외선 난방시스템	- 원적외선을 이용하는 난방장치 · 다만, 전기열원방식 및 바닥난방시설은 제외
⑦2 스프링 쿨 시스템	- 지붕표면에 물을 미세하게 분사하여 태양열의 실내전도를 막아 실내 냉방 부하를 줄여주는 장치 · 분사정도가 센서로 자동조절 되는 것	

구 분	자금지원 세부내역	비 고
자.수송설비	⑦③창세트	-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으로 등록된 창세트로 교체하는 사업  · 공동주택은 지원제외하며, 준공된지 1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한함.
	⑦④승용차 요일제 이행관련 시설	- 승용차 요일제 이행과 관련하여 운휴일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RFID리더기 등 요일제 인식 전자기기)
	⑦⑤공회전제한장치, 운전모니터링 시스템 및 에어스포일러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인증한 공회전 제한장치  - 차량의 공회전시간, 급가속, 급제동, 엔진회전수 등이 PC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한 운전모니터링 시스템 (다만, 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디지털 운행기록계가 부착된 경우에 한함)  - 에어스포일러
	⑦⑥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효율등급표시기자재로서 최상위 등급을 부여받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단, 소비효율등급표시가 없는 기자재인 경우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포함)	-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에 의한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한함
차.생산시설	⑦⑦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
	⑦⑧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대기전력 저감기기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절약마크 표시제품
카.수요관리 설비설치 사업	⑦⑨심야전력이용 축냉설비	- 심야전력을 이용한 축냉설비  · 한국전력에서 심야전력기기로 인정한 설비에 한함

구 분	자금지원 세부내역	비 고
	<p>⑧0가스히트펌프</p> <p>⑧1흡수식 냉방시설</p> <p>⑧2상용자가발전 설비</p> <p>⑧3연료전환 사업</p> <p>⑧4전력저장장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스엔진 동력으로 구동되는 냉난방장치</li> <li>· 설치용량(kW)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대상인 경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함</li> <li>- 연소가스, 증기, 고온수 등을 이용한 흡수식냉동기 및 냉온수기</li> <li>·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또는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는 설치용량(kW)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대상인 경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함</li> <li>- 열병합발전, 폐열 또는 폐압력 이용발전 및 기타 연료 등을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li> <li>·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li> <li>- 사용연료가 유류 또는 전기일 경우에 가스(LNG, LPG 등)로 전환하는 사업</li> <li>· 가스 저장 및 공급설비에 한함</li> <li>- 전기를 저장하였다가 필요할 경우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li> <li>·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연계된 시스템은 제외</li> </ul>

※ 이 지침 제17조에 따른 설비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④9UV LED노광기의 자금지원대상 유효기간은 2019년12월31일까지이며, ①9유리 화학강화로, ④2마그네틱 드라이브 커플링의 자금지원대상 유효기간은 2020년12월31일까지이며, ⑤0회생제동장치, ⑤1인버터제어형 진공펌프의 자금지원대상 유효기간은 2021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별표2]

자금추천시설 시공업체(ESCO)의 위반사항에 관한 조치기준

1. 조치대상자 및 대상시설

- 자금추천시설을 시공하는 설치업체(대표자 포함)
  - 자금사용 위반행위 발생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자는 포함한다.
- 위반업체가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추천시설설치공사
  - 다만, 자금추천서에 기재된 설비를 시공하지 않은 사실을 공사 완료전에 공단에 서면으로 고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치기준

구 분	위 반 내 용	조치내용
가.설치공사 위반	자금추천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설비를 시공하지 않은 경우로서,	
	1) 위반금액이 전체 자금추천금액의 50%를 초과한 때 2) 위반금액이 전체 자금추천금액의 20%를 초과한 때	2년간 지원제외 1년간 지원제외
나.추천신청 위반	1) 자금사용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신청 하도록 안내 또는 권유 등을 한 경우	2년간 지원제외
	2) 기타 자금지원지침을 위반한 경우	1년간 지원제외

3. 구제제도

- 공단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조치 계획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조치를 받은 자의 이의신청이 제한기간 경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조치를 받은 자가 위반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공단에 제한기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제출된 증빙서류(필요시 현장확인)를 검토후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축 또는 해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경우 공단은 공단 홈페이지에 위반사항 및 조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3]

ESCO투자사업 성과확정계약 자금지원 대상사업

대상사업	비 고
고효율기자재	○ [별표1] ⑧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설치하는 사업
에너지절약형 사출성형기	○ [별표1] ④⑧에너지절약형사출성형기를 설치하는 사업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 [별표1] ④③인버터제어형압축기를 설치하는 사업



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세부기준

2019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및 자금지원 세부기준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jagum](http://www.energy.or.kr/jagum))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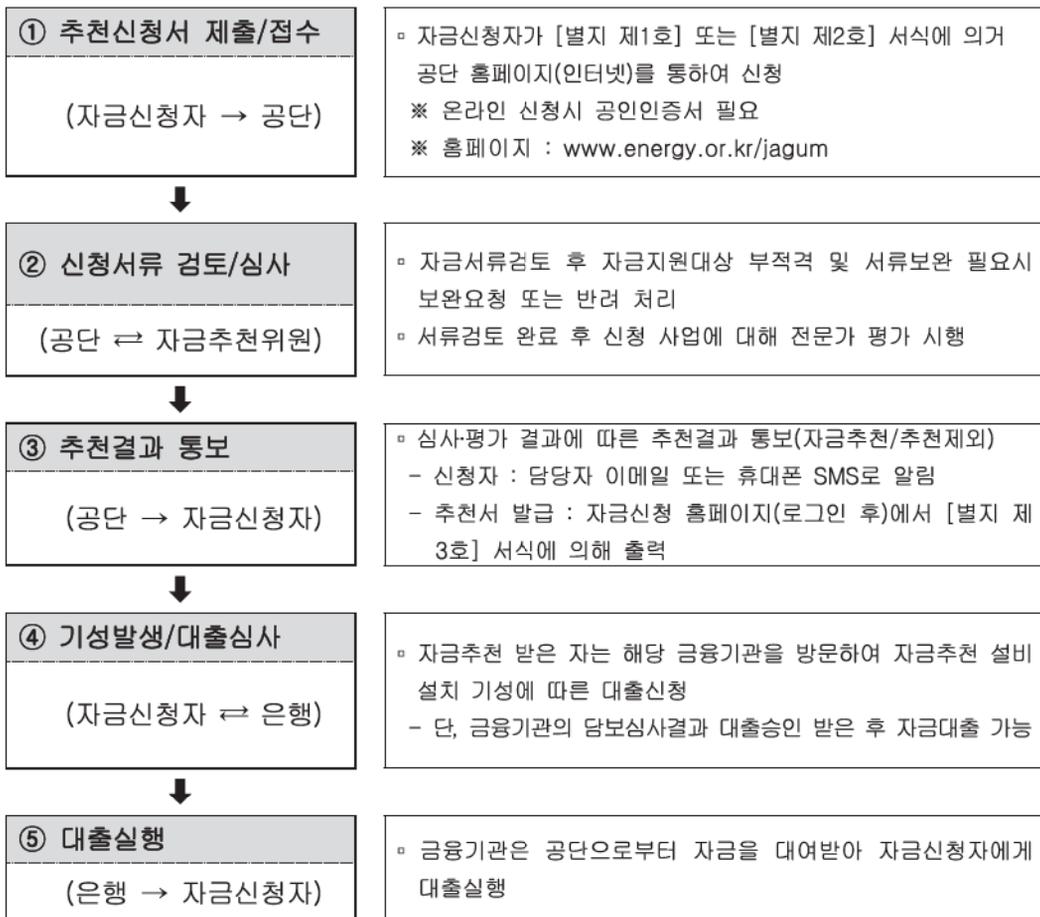
## 2019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세부기준

### 1. 추진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2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 동 기준의 내용이 정부 관련규정(고시, 공고)과 상이한 경우에는 정부 관련 규정에 따름

### 2. 추천 절차



### 3. 접수 일정

#### □ 사업별 배정자금 소진 시까지 매월 접수

- 매월 1일부터 7일까지 (다만, 사정에 따라 접수기간 조정가능)
  - \* 접수일의 09시부터 18시까지 온라인 접수하고,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
- 매월 추천신청 금액은 사업별 배정예산의 50% 범위에서 추천신청을 마감할 수 있음
- 공단이 자금추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별 지원규모를 조정하여 수시 접수 가능하고, 자금지원 세부내역별로 지원한도를 예산 대비 1/3 이내로 조정할 수 있음

### 4. 심사 방법

#### □ 심사대상

- 추천대상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은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금 추천
  - 다만, 자금지원 지침 제9조의 자금추천심사 예외사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자금추천 신청서 검토 후 자금 추천
    - \* 추천대상금액이란 총사업비 중 융자지원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자금(계속사업의 경우는 각 년도별 자금추천 대상금액의 합계)

#### □ 심사방법

- 추천대상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은 자금추천위원회의 해당분야 전문가 15인 이내의 오프라인 심사
  - 추천대상금액이 1억원 이상부터 20억원 미만인 사업은 자금추천위원회 소속의 해당분야 전문가 3~5인의 온라인 평가
    - \* 다만, 공단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금추천대상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도 오프라인 심사 가능

구 분	추천대상금액		
	1억원 미만	1억원~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심 사 (평 가)	공단 자체 검토	자금추천위원 (3~5인 온라인 평가)	자금추천위원회 (15인 이내 오프라인 심사)

- 민원·환경영향 우려 사업, 실태조사 시 설치확인이 어려운 설비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사업 등의 경우에는 사전 현장실사를 통해 신청 내용 확인

#### □ 심사기준

- 자금추천위원회 심사(평가)위원은 [별표2] 또는 [별표3]의 각 사업별 '평가배점표'에 따라 각 항목별로 평점 부여
- 평가결과는 자금추천위원회 심사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 다만, 자금추천위원회 심사위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

## 5. 추천 기준

#### □ 추천대상

- 최소 3인 이상의 심사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한 결과가 70점 이상인 사업

#### □ 처리기간

- 접수기간 마감일로부터 심사대상 사업은 30일 이내, 비대상 사업은 20일 이내에 추천심사 결과를 자금신청자 및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통보
- \* 다만, 추천신청서 보완기간, 일요일 및 공휴일은 추천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 자금대출

- 추천된 자금은 주 1회(매주 목요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대여)
- \* 다만, 대여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에 대여

- 최초자금 인출일(자금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 정기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까지 인출가능

#### □ 추천 포기 · 취소 · 제외

- 추천포기 : 에너지사용자가 당해 추천받은 사업의 연내 추진이 어려워 에너지사용자가 스스로 추천을 포기하는 경우
- 추천취소 : 당해 추천받은 사업 중 최초인출시한 내에 추천포기 없이 자금 인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지침을 위반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추천을 취소하는 경우
- 추천제외 : 추천신청서에 대한 온오프라인 평가시 평가점수가 미달하여 추천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6. 기타 사항

### (1) 제출 및 확인 서류

- 자금추천 신청자는 [별표1] 구비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
- 시공업체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시공업체 확인서’ 를 제출해야 하며, 자금지원 지침 위반사항 발생 시 최대 2년 이내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 금리우대 또는 추천심사 시 가점을 부여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 를 제출
-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 를 제출
- 자금추천 신청자가 중소기업인 경우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를 제출

**(2) 신청서 반려**

- 계약서, 상세내역서, 에너지절감효과 산출근거 등 [별표1]의 구비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류보완이 안 되는 경우(다만, ESCO투자사업은 보완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사후관리 위반업체(자금추천 신청자, 시공업체,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가 참여하는 사업 중 참여제한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
- 전년도 9월 이전에 착수(계약)된 사업
-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추천취소된 사업을 재신청한 경우
- 당해연도에 추천포기된 사업을 재신청한 경우

**(3) 재신청**

- 부득이한 사정으로 추천에서 제외된 사업은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4) 추천변경 및 추천포기 신청**

- 추천받은 사업의 사업비, 시설내역(수량, 모델명 등), 대표자, 설치장소 및 은행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각 사업별 ‘추천변경신청서’에 따라 변경 신청
  - \* 다만, 당해연도 추천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변경신청은 10월 이후 불가

- 추천받은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추천포기 신청을 하여야 함

**(5) 사업수행결과 보고**

- 자금신청자는 당해연도 자금을 최종 인출할 경우에는 최종자금 인출

희망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업수행보고서’ 를 작성하여 해당금융 기관으로 제출

### (6) 특이 사항

-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세부운용사항은 공단이 별도로 정함
- 동 기준은 자금추천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경 또는 보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별표1]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신청 구비서류

[별표2] 평가배점표(ESCO투자사업)

[별표3] 평가배점표(절약시설 설치사업)

[별지 제1호] 추천신청서(ESCO투자사업)

[별지 제2호] 추천신청서(절약시설 설치사업)

[별지 제3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서

[별지 제4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변경신청서(ESCO투자사업)

[별지 제5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변경신청서(절약시설 설치사업)

[별지 제6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 포기 신청서

[별지 제7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사업수행보고서

[별지 제8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시공업체 확인서

[별지 제9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별지 제10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별표1]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신청 구비서류

## □ 공통 구비서류

번호	구 비 서 류	해 당 시 설	관 계 기 관	비 고
1	추천신청서	공통필수	공 단	온라인 용자시스템
2	공사(ESCO)계약서, 세부내역서	공통필수	시공업체	
3	기기도면(제품 카달로그), 설치도면(배치도)	공통필수	시공업체	
4	사업자등록증	공통필수	세무서	
5	에너지절감효과 산출근거자료	공통필수	신청자	수요관리설비는 제외
6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공통필수	신청자	[별지 제9회] 서식 (전년도 계속사업은 제외)
7	에너지진단결과 보고서	①~④, ⑦	에너지진단기관	
8	보조금 계산근거	③, ⑧, ⑳, ㉗~㉙, ㉛ 등	신청자	타 보조금 지원시
9	교체전 설비사진	-	신청자	설비 교체시
10	법인등기부등본 등 소유(또는 임대) 증빙자료	-	등기소	설치장소가 다른 경우
11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12	중소기업지원사업 정보활용 동의서	-	신청자	중소기업
13	중견기업확인서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14	시공업체확인서	-	시공업체	
15	특별시방서	공통필수	신청자	ESCO투자사업
16	에너지절감량 확인서 또는 보증서	공통필수	신청자	ESCO투자사업
17	사후관리계획서(MRV포함)	공통필수	신청자	ESCO투자사업
18	하자보증서	공통필수	신청자	ESCO투자사업
19	사업 전·후 설치도면(배치도)	공통필수	신청자	ESCO투자사업
20	환경관련 각종 인허가증	공통필수	행정기관장	ESCO투자사업(해당시)
21	투자비상환계획서	-	신청자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 또는 성과확정 계약시

\* 모든 구비서류는 자금추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그 밖에 자금지원지침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의 비고란을 만족하는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 설비(시설)별 구비서류(※ 필요시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설비(사업)	제출서류	비 고
⑥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사업	1. EnMS 참여신청서 또는 인증서	
⑦ 에너지진단결과 개선사업	1.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에 의한 에너지진단 결과보고 (진단완료일자 확인자료) 2. 에너지진단 결과보고서(공정별 또는 설비별 진단효과 자료) 3. GGP 기술지도보고서(대·중소기업 동반녹색성장 협력사업)	
⑨ 집단에너지 사업자 상호간 또는 동일한 집단에너지사업자 내 사업장 상호간 열 네트워크 구축사업	1.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증 2. 공사계획 승인(신고)서	
⑩ 집단에너지사업자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1.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증 2. 공사계획 승인(신고)서 3. 준공 관련 서류	
⑪ 기술개발 실용화 설비	1. 에너지절약효과(10%이상) 증빙자료 2. 자금추천위원회 발표자료 및 필요서류	
⑭ 노후 보일러 개체	1. 비검사대상기기 : 노후 보일러 명판 2. 보일러 설치도면 3. 설치보조금 계산 근거(저녹스버너 보조금 등에 해당되는 경우)	
⑮ 폐열이용 보일러	1. 기설치된 소각로 도면 및 사진(소각폐열을 이용하는 경우)	
⑳ 전기 유도용해로 ㉑ 고주파 유도 가열장치	1. 수변전설비 결선도	
㉔ 에너지절약형 가열로 또는 열처리로	1. 제어계통도 설명자료(공연비, 로내온도)	
㉕ 폐열 또는 폐압력 이용 발전장치	1. 기설치된 소각로 도면 및 사진(소각폐열을 이용하는 경우)	
㉗ 폐열이송설비	1. 열공급(잉여열)계약서	
㉘ 히트펌프 (폐열회수형 또는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1. 배관계통도	
㉚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1. 인버터적용 증빙서류(카달로그)	
㉛ 밀폐식 연속 수세장치	1. 수세온도 자동조절장치 설명자료	
㉜ 저육비염색기	1. 육비관련 증빙자료(시험성적서, 카달로그 등)	
㉝ 히트셋팅기	1. 온도자동제어 및 배기습도감지로 배기량자동 조절 설명자료	

설비(사업)	제출서류	비 고
68 에너지절약형 공기조화시스템	1. 장비일람표 2. 기타 에너지절약특성 설명자료	
70 건물자동화 제어장치	1. 장비일람표 2. 에너지절약 자동운전제어 설명자료	
73 창세트	1.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건축물대장	
75 공회전제한장치, 운전모니터링 시스템 및 에어스포일러	1. 공회전제한장치 인증서 (국립환경과학원) 2. 디지털운행기록계 등록서류 (교통안전공단)	
76 에너지효율등급표시기자재 (최상위 등급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 생산시설 77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생산시설 78 대기전력 저감기기 생산시설	1.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sup>주1)</sup> (제조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 포함) 2. 당해 연도 매출실적 확인서 <sup>주2)</sup> 3. 투자소재지에 대한 공장등록증, 부지관련 확인 서류 등	
79 심야전력이용 축냉설비	1. 장비일람표 2. 설치보조금 계산근거 3. 한국전력공사의 심야전력 전기사용신청서 4. 심야전력기기 인정 및 보급에 관한 계약서 (규격서 포함)	
80 가스히트펌프 81 흡수식냉방시설	1. 장비일람표 2. 냉난방계통도 3. 설치보조금 계산근거	
82 상용자가발전 설비	1. 장비일람표	
84 전력저장장치	1. 장비일람표 2. 계통도 3. 설치보조금 계산근거 4.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주1) 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의 확인본으로 제출(연간매출액에 당해제품만의 실적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제품의 분리매출액(생산일보 등)이 첨부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서 제출)

주2) 당해제품의 매출액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거래명세서 등)

[별표2] 평가배점표(ESCO투자사업)

평가항목	ESCO투자사업 평가배점표	평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낮음	낮음	
사업계획 (10)	① 사업계획 타당성 (10) - 구체적인 사업의 목적, 계획, 성과 평가	10	9	8	7	6	
사업효과 (60)	② 산출근거타당성 (10) - 에너지절감량 산출과정의 정확성, 신뢰성 평가	10	9	8	7	6	
	③ 에너지절감효과 (30) - 절감량(toe/년) ÷ 추천대상금액(억원) * 산출근거의 타당성과 연동하여 점수부여	절감효과 산출근거타당성	100 이상	80 이상	60 이상	40 이상	40 미만
		10	30.0	28.0	26.0	24.0	22.0
		9	27.0	25.2	23.4	21.6	19.8
		8	24.0	22.4	20.8	19.2	17.6
		7	21.0	19.6	18.2	16.8	15.4
	6	18.0	16.8	15.6	14.4	13.2	
	④ 에너지절감률 (20) - {사업전사용량(toe) - 사업후사용량(toe)} ÷ 사업전사용량(toe) × 100% * 산출근거의 타당성과 연동하여 점수부여	절감률 산출근거타당성	25% 이상	20% 이상	15% 이상	10% 이상	5% 이상
		10	20.0	18.5	17.0	15.5	14.0
		9	18.0	16.7	15.3	14.0	12.6
8		16.0	14.8	13.6	12.4	11.2	
7		14.0	13.0	11.9	10.9	9.8	
6	12.0	11.1	10.2	9.3	8.4		
사업내용 (30)	⑤ 사후관리계획 적정성(MRV계획 타당성) (15)	15	13.5	12	10.5	9	
	⑥ 에너지진단의 충실도 (15)	15	13.5	12	10.5	9	
가점 (+26)	⑦ 에너지사용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2
	⑧ ESCO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2
	⑨ ESCO협회에서 인정한 직전년도 자체투자자금 투자비율이 20%이상인 기업						+2
	⑩ 에너지사용자 또는 ESCO가 기술개발실적이 있는 경우(최근 3년 이내) - NET · NEP 인증(국가기술표준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녹색인증(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실적						+2
	⑪ ESCO가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최근 2년 이내) - ESCO기술인력(등록기술인력 3인이상)이 공단 또는 ESCO협회의 교육수료 실적						+3
	⑫ 신청사업이 EMS 등 ICT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평가되는 경우						+10
	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의무진단을 받은 사업장이 직전주기 에너지진단결과에 대한 개선이행실적(개선이행률)이 50% 이상인 경우						+3
	⑭ 신청대상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직전년도 및 당해년도에 예비인증받은 건축물에 한함.)						+2
감점 (-5)	⑮ 추천된 사업을 취소포기한 사실이 있는 에너지사용자 또는 ESCO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직전년도 추천사업에 한함)						-3
	⑯ 추천자금 기준 20%이상 미인출 사실이 있는 에너지사용자 또는 ESCO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직전년도 추천사업에 한함)						-2
검토 의견					평점 합계		

[별표3] 평가배점표(절약시설 설치사업)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낮음	낮음	
사업 계획 (30)	① 사업계획 타당성(15) - 구체적인 사업의 목적, 계획, 성과 평가	15	13.5	12	10.5	9	
	② 투자시설의 적합성(15) - 시설의 신뢰성, 금액의 적정성 등 평가	15	13.5	12	10.5	9	
사업 효과 (60)	③ 산출근거 타당성(10) - 에너지절감량 산출과정의 정확성, 신뢰성 평가	10	9	8	7	6	
	④ 에너지절감효과(30) - 절감량(toe/년) ÷ 추천대상금액(억원) ※ 산출근거의 타당성과 연동하여 점수부여	절감효과 산출 근거타당성	100 이상	80 이상	60 이상	40 이상	40 미만
		10	30.0	28.0	26.0	24.0	22.0
		9	27.0	25.2	23.4	21.6	19.8
		8	24.0	22.4	20.8	19.2	17.6
		7	21.0	19.6	18.2	16.8	15.4
	6	18.0	16.8	15.6	14.4	13.2	
	⑤ 에너지절감률(20) - {사업전사용량(toe) - 사업후사용량(toe)} ÷ 사업전사용량(toe) × 100% ※ 산출근거의 타당성과 연동하여 점수부여	절감률 산출 근거타당성	25% 이상	20% 이상	15% 이상	10% 이상	5% 이상
		10	20.0	18.5	17.0	15.5	14.0
		9	18.0	16.7	15.3	14.0	12.6
8		16.0	14.8	13.6	12.4	11.2	
7		14.0	13.0	11.9	10.9	9.8	
6	12.0	11.1	10.2	9.3	8.4		
기타 기대 효과 (10)	⑥ 기타 기대효과 (10) - 사업추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타 기대효과 평가	10	9	8	7	6	
가점 (+21)	⑦ 에너지사용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3	
	⑧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인증(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받은 경우(최근 3년 이내)					+2	
	⑨ 요.로설비 중 ‘축열식 버너’ 적용일 경우					+1	
	⑩ 신청사업이 EMS 등 ICT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평가되는 경우					+10	
	⑪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의무진단을 받은 사업장이 직전주기 에너지진단결과에 대한 개선이행실적(개선이행률)이 50% 이상인 경우					+3	
	⑫ 신청대상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직전년도 및 당해년도에 예비인증받은 건축물에 한함.)					+2	
감점 (-5)	⑬ 추천된 사업을 취소 또는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직전년도 추천사업에 한함)					-3	
	⑭ 추천자금 기준 20%이상 미인출 사실이 있는 경우(직전년도 추천사업에 한함)					-2	
검토 의견					평점 합계		

[별지 제1호] 추천신청서(ESCO투자사업)

**1 추천신청서**

<input type="checkbox"/> 신규신청 <input type="checkbox"/> 재신청		<input type="checkbox"/> 성과확정계약 <input type="checkbox"/>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input type="checkbox"/> 신증설 <input type="checkbox"/> 개체		
에너지사용자 기본정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기 업 구 분			
	법인등록번호					
	업 종		생 산 제 품			
	투 자 지	주 소	(우 : )			
		전 화	☎	FAX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E S C O 업체 기본정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기 업 구 분			
	법인등록번호					
	업 종					
	사 무 소	주 소	(우 : )			
		전 화	☎	FAX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신 청 정 보	시 설 명	설비명 ( ) 세부시설명 ( )				
	성과보증(상환)기간	20 . . . ~ 20 . . .	설 치 기 간	20 . . . ~ 20 . . .		
	총계약금 (이자, VAT제외)	백만원		추천신청액 (이자, VAT제외)	백만원	
	계속사업 ○YES ○NO	차 수				
		연차별 사업비				
		추 천 번 호				
	에너지진단사업 ○YES ○NO	진 단 일		진 단 기 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 2항에 따른 의무진단결과에 따라 수행하는 시설의 경우만 체크 후 작성(진단완료일로부터 4년 이내 사업만 해당)				
기타 정책자금 사용여부 (장려금, 보조금 등)	○YES ○NO		용자취급은행	은행 지점		
	기관			☎		
금리 선택	○고정		○변동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추천을 신청합니다. 20 . . . . <b>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귀하</b>						

## 2 시설 투자 계획서

사업계획서 (필요시 별도 작성 후 첨부)

사 업 목 적 (정책과 연계성 등)	
사 업 추 진 내 용 (사업의 타당성 등)	
추 진 성 과 (기대효과, 보급효과 등)	

신청설비 일반현황 (주설비 위주로 기재)

NO	설비명	모델명/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용도 및 기능
1						
2						
3						
4						

시설의 주요특징

(※ 자금지원 대상설비 조건 충족 여부 및 설비 수량, 용량 선정 근거 기재)

### 3 절 감 효 과 산 출

<input type="checkbox"/> 기대효과산출						
전년도에너지사용량	연 료		toe/년	전 력	toe/년	합계 toe/년
	구 분	단 위	사업 전 <sup>주1)</sup>		사업 후	
에너지사용량	연 료 <sup>주2)</sup>	toe/년				
	전 력	MWh/년				
	합 계	toe/년				
에너지사용금액	연 료	백만원/년				
	전 력	백만원/년				
	합 계	백만원/년				
	구 분	에너지 절감량		에너지 절감금액		
에너지 절감량	연 료	toe/년		백만원/년		
	전 력	MWh/년		백만원/년		
	합 계	toe/년		백만원/년		
목표(이론)절감율(%)		보증절감율(%)				
투자비 회수기간(년)		에너지 절감효과(toe/억원)				
주1) 연료 : 연료원별로 작성 주2) 신·증설의 경우, 신청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와 비교되는 보급이 일반화된 설비를 선정하여 사업전 에너지사용량 등 산출. 단, 운전조건(설비가동시간 등)은 절약형설비와 동일하게 산정						
<input type="checkbox"/> ESCO평가기준 관련 자료 및 첨부						
에너지진단보고서		에너지진단보고서 (절감량 산출근거 등) 첨부			파일첨부	
사후관리계획서		사후관리계획서 (MRV계획서 포함)자료 첨부			파일첨부	
기타 첨부파일		교육실적 등 가점항목 자료 첨부			파일첨부	
※ 첨부서류 없을 경우 미인정						

## 4 신청 시설 명세

계약 내역서

① 재 료 비

구분	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천원)	합계	외자금액	환율	기준일자	비고
소계										

② 노 무 비

구분	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천원)	합계	외자금액	환율	기준일자	비고
소계										

③ 경 비

구분	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천원)	합계	외자금액	환율	기준일자	비고
소계										

④ 일반관리비

구분	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천원)	합계	외자금액	환율	기준일자	비고
소계										

⑤ 이 운

구분	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천원)	합계	외자금액	환율	기준일자	비고
소계										

⑥ 기 타

구분	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천원)	합계	외자금액	환율	기준일자	비고
소계										

⑦ 항목별 합계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운	기 타	총 계

\* 추천신청서 설비의 신청금액을 기록

\* 상기 시설명세는 계약서 및 계약상세내역서를 근거로 작성해야 하며, 상기 시설명에서 해당되는 항목이 없을 경우 기재할 필요 없음

월별인출계획

(단위 : 천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 자금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천금액의 20% 이상을 인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추천신청서(절약시설설치사업)

**1 추천신청서**

<input type="checkbox"/> 신규신청 <input type="checkbox"/> 재신청		<input type="checkbox"/> 절약시설 설치사업		<input type="checkbox"/> 신·증설 <input type="checkbox"/> 개체		
기본정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기업구분			
	법인등록번호					
	업종		생산제품			
	사무소	주소 (우 : )				
		전화 ☎	FAX			
	투자지	주소 (우 : )				
		전화 ☎	FAX			
	설비담당	담당자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 ☎	휴대전화 ☎
대출담당	담당자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 ☎	휴대전화 ☎	
신청정보	시설명	설비명 ( )		세부시설명 ( )		
	총사업기간					
	총사업비 (VAT제외)	백만원	추천신청액 (VAT제외)	백만원		
	계속사업 ○YES ○NO	차수				
		연차별 사업비				
추천번호						
기타 정책자금 사용여부 (장려금, 보조금 등)	○YES ○NO		용자취급은행	은행	지점	
	기관			☎		
위와 같이 에너지융합리화를 위한 자금추천을 신청합니다. 20 . . . <b>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b>						

## 2 시설 투자 계획서

사업계획서 (필요시 별도 작성후 첨부)

사 업 목 적	
사업추진 내용	
추진 성과 (기대 효과)	

신청설비 일반현황 (주설비 위주로 기재)

NO	설비명	모델명/세조사	용량	단위	대수	용도 및 기능
1						
2						
3						
4						

시설의 주요특징

(※ 자금지원 대상설비 조건 충족 여부 및 설비 수량, 용량 선정 근거 기재)

### 3 절 감 효 과 산 출

기대효과산출

NO	설비현황			개선전 에너지 사용량				개선후 에너지사용량				기대효과		
	설비명	용량 단위	수량	에너지 종류	사용량 단위	석유 환산톤	에너지 사용금액 (백만원)	에너지 종류	사용량 단위	석유 환산톤	에너지 사용금액 (백만원)	에너지 절감량	절감 금액 (백만원)	에너지 절감률 (%)
1														
2														
3														
4														
합계														

에너지절감외 기타기대효과

개 요	
세부내용	

## 4 신청시설명세

계약내용 집계표

구분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서 금액 (VAT제외, 단위 : 천원)
계약 1			
계약 2			
합 계			

종합내역서 ('상세내역서 등록' 작성 내용 자동집계)

구분	계약명	계약서 금액 (VAT제외, 단위 : 천원)	비고
① 재 료 비	계약 1		
	계약 2		
	소 계		
② 노 무 비	계약 1		
	계약 2		
	소 계		
③ 경 비	계약 1		
	계약 2		
	소 계		
④ 일반관리비	계약 1		
	계약 2		
	소 계		
⑤ 이 운	계약 1		
	계약 2		
	소 계		
⑥ 기 타	계약 1		
	계약 2		
	소 계		
합 계			

월별인출계획

(단위 : 천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 자금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천금액의 20% 이상을 인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서

• 자금추천일 <b>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서</b>	추천번호	
	최초인출시한	

**1. 업체개요**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 화 번 호	
투자소재지		전 화 번 호	

**2. 추천개요**

사 업 명	
지원대상시설	[첨부1] 추천시설명세 참조
추 천 금 액	
상환기간 및 금리	
추 천 조 건	
시공업체명	

**3.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부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사용 유의사항 확인서”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li> <li>• 동 추천서는 해당 시설의 품질, 성능과는 무관하며, 가동 후 에너지절감량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당해년도 추천된 자금을 최종 인출하는 경우 인출 희망일 일주일전까지 사업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li> <li>• 자금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인출금액이 추천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인출하여야 합니다.(※기한 내 미인출 시 추천 취소)</li> <li>• 추천포기한 사업은 당해연도에 재신청하실 수 없으며, 추천취소된 사업은 다음연도까지 재신청하실 수 없습니다.</li> </ul>
---

※ 위 자금추천시설은 설치완료일(최종자금 인출일) 이후 현장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 대상자를 추천합니다.(담당자 :    전화 :    )

20    년    월    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OO은행장 귀하**

**[첨부1] 추천 시설 명 세**

공사명 :

번호	시 설 명	규격 및 단위	수량	추천대상금액(천원)	비 고
1	재료비				
소 계					
2	노무비				
소 계					
3	경비				
소 계					
4	일반관리비				
소 계					
5	이윤				
소 계					
합 계					

[별지 제4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변경신청서(ESCO투자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 변경 신청서 (ESCO투자사업)						
사 업 명				추천번호		
에너지이용자 기본정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기 업 구 분		
	법인등록번호					
	업 종			생 산 제 품		
	투자지	주 소	(우 : )			
		전 화	☎		FAX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 ☎	휴대전화 ☎	
E S C O업체 기본정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기 업 구 분		
	법인등록번호					
	업 종					
	사무소	주 소	(우 : )			
		전 화	☎		FAX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 ☎	휴대전화 ☎	
변 경 사 항	선택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input type="checkbox"/>	은행명 변경				
	<input type="checkbox"/>	업체명 변경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변경	대표자명			
	<input type="checkbox"/>	추천시설내역변경		(백만원)	(백만원)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으로 변경	차수 연차별 사업비 추천번호			
	<input type="checkbox"/>	성과보증(상환)기간				
	<input type="checkbox"/>	투자소재지				
	<input type="checkbox"/>	금리변경		○고정 ○변동	○고정 ○변동	
변경사유(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근거서류 별첨)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추천을 변경 신청합니다. 20 . . . <b>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b>						

[별지 제5호] 추천변경신청서(절약시설설치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 변경 신청서 (절약시설 설치사업)							
사 업 명				추 천 번 호			
기본정보 (업체정보관리)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기 업 구 분		
	법인등록번호						
	업 종				생 산 제 품		
	사무소	주 소 (우 : )					
		전 화 ☎		FAX			
	투자지	주 소 (우 : )					
		전 화 ☎		FAX			
	신청설비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 ☎
							휴대전화 ☎
재무·회계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 ☎	
						휴대전화 ☎	
변경사항	선택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input type="checkbox"/>	은행명 변경					
	<input type="checkbox"/>	업체명변경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대표자변경	대표자명				
	<input type="checkbox"/>	추천시설내역변경					
	<input type="checkbox"/>	시공업체변경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으로 변경		(백만원)		(백만원)	
<input type="checkbox"/>	투자소제지						
변경사유(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근거서류 별첨)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추천을 변경 신청합니다. 20 . . . . .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6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 포기 신청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 포기 신청서					
기본정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사무소	주 소 (우 : )			
		전 화 ☎	FAX		
	투자지	주 소 (우 : )			
		전 화 ☎	FAX		
	신청시설명		추천번호		
			추천일자		
추천금액					
포기사유	선 택	내 용			
	<input type="checkbox"/>	은행 대출 불가(담보부족 등의 사유로)			
	<input type="checkbox"/>	시설설치 지연			
	<input type="checkbox"/>	시설의 설치 포기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유 ( )				
<p>위와 같이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추천을 포기 신청합니다.</p> <p>20 . . .</p> <p><b>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b></p>					

[별지 제7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사업수행보고서

<b>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사업수행보고서</b>			계속사업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ESCO투자사업 <input type="checkbox"/> 절약시설설치사업		
신청자	업체명		추천번호		
	대표자		연락처		
	주소				
사업내용	추천시설				
	공사기간	20 . . . ~ 20 . . .			
	신청금액	(천원)	추천금액	(천원)	
	인출금액 (인출예정포함)	날 짜	금 액 (공급가액)	비 고 (공사내역 등)	
		월 일	(천원)		
		월 일	(천원)		
		월 일	(천원)		
		월 일	(천원)		
월 일		(천원)			
	합 계	(천원)			
<p>「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제24조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을 수행하였음을 보고하며, 위반시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자금사용자(대표자) <span style="float: right;">(서명 또는 인)</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 font-weight: bold;">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p>					
<p>[첨부 서류]</p> <p>1. 자금집행내역(세금계산서 등)</p> <p>2. 설치사진</p>					

[별지 제8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시공업체 확인서

<b>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시공업체 확인서</b>				
<input type="checkbox"/> 사업내용				
신청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투자지주소				
추천신청시설명		계약금액 (VAT제외)		
<input type="checkbox"/> 시공업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 )			
전화		FAX		
대표자명		연락처	휴대전화	
담당자명		부서/직책		
담당자 이메일	@	연락처	휴대전화	
<p>상기인은 위 시설을 시공함에 있어서 자금신청자가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자금추천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시공하는 등 동 지침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p>				
<p>시공업체가 동 지침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금지원지침 [별표2] 『자금추천시설 설치업체의 위반사항에 관한 조치기준』에 따라 해당 시공업체가 참여하는 자금추천신청에 대하여 2년 이내에서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p>				
20 . . .				
확인자(시공업체 대표) :			(인)	



[별지 제10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인)  
 대표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주) 본 동의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5

참고자료

- 
1. 에너지절감량 산출방법 안내
  2. 연료 및 열의 석유환산기준
-



## 1. 에너지절감량 산출방법 안내

※ 아래에 제시된 에너지절감량 산출방법으로 절감량 산출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절감량을 산출하여 제시

### 가 설비개체(공정개선) 사업

#### □ 적용대상

- 에너지사용자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지침」 [별표1] 자금지원세부내역 설비로의 개체 또는 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기존의 설비를 효율이 높은 설비로 개체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

#### □ 에너지절감량 산출

$$\text{에너지절감량(toe}^1\text{/년)} = \text{개선전 에너지사용량} - \text{개선후 에너지사용량}$$

- 개선전 에너지사용량 (toe/년)
  - 개체하고자 하는 대상설비 또는 개체대상설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열원 공급설비의 지난 1년간의 에너지사용량
- 개선후 에너지사용량 (toe/년)
  - 개체대상설비의 개선전 연간운전시간을 기준으로, 개체되는 설비 또는 개체(공정개선)사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열원공급설비의 예상되는 에너지 사용량을 산출

#### □ 참고사항

- 개체하는 설비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개체후 설비의 용량을 개체 전 설비의 용량으로 환산하여 개선후 에너지사용량 산정

1) 석유환산톤(toe) : 각각 다른 종류의 에너지를 원유 1ton의 발열량( $10^7$ kcal)을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

## 나 신·증설사업

### □ 적용대상

- 에너지사용자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1] 자금지원세부내역 설비를 새로 도입하는 사업

### □ 에너지절감량 산출

$$\text{에너지절감량 (toe/년)} = \text{일반설비 에너지사용량} - \text{절약형설비 에너지사용량}$$

- 일반설비 에너지사용량 (toe/년)
  - 신청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와 비교되는 보급이 일반화된 설비를 선정
  - 지난 1년간의 설비의 가동시간 또는 향후 신설되는 사업장 예상 운전 시간을 고려
  - 에너지절약형 설비가 아닌 일반설비를 설치했을 경우 예상되는 에너지 사용량을 산출
- 절약형설비 에너지사용량 (toe/년)
  - 지난 1년간의 설비의 가동시간 또는 향후 신설되는 사업장 예상 운전 시간을 고려
  - 신청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를 설치했을 경우 예상되는 에너지사용량을 산출

### 《 주의사항 》

신·증설사업 절감량 산출시 일반설비와 절약형설비의 운전조건(설비가동시간 등)은 설비사양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산정

## 2.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에너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표, 개정 2017.12.28)

구분	에너지원	단위	총발열량			순발열량		
			MJ	kcal	석유환산톤 (10 <sup>-3</sup> toe)	MJ	kcal	석유환산톤 (10 <sup>-3</sup> toe)
석유 (17종)	원유	kg	45.0	10,750	1.075	42.2	10,080	1.008
	휘발유	L	32.7	7,810	0.781	30.4	7,260	0.726
	등유	L	36.7	8,770	0.877	34.2	8,170	0.817
	경유	L	37.8	9,030	0.903	35.2	8,410	0.841
	B-A유	L	39.0	9,310	0.931	36.4	8,690	0.869
	B-B유	L	40.5	9,670	0.967	38.0	9,080	0.908
	B-C유	L	41.7	9,960	0.996	39.2	9,360	0.936
	프로판(LPG1호)	kg	50.4	12,040	1.204	46.3	11,060	1.106
	부탄(LPG3호)	kg	49.5	11,820	1.182	45.7	10,920	1.092
	나프타	L	32.3	7,710	0.771	29.9	7,140	0.714
	용제	L	32.8	7,830	0.783	30.3	7,240	0.724
	항공유	L	36.5	8,720	0.872	33.9	8,100	0.810
	아스팔트	kg	41.4	9,890	0.989	39.2	9,360	0.936
	윤활유	L	40.0	9,550	0.955	37.3	8,910	0.891
	석유코크스	kg	35.0	8,360	0.836	34.2	8,170	0.817
	부생연료유1호	L	37.1	8,860	0.886	34.6	8,260	0.826
	부생연료유2호	L	39.9	9,530	0.953	37.7	9,000	0.900
가스 (3종)	천연가스(LNG)	kg	54.7	13,060	1.306	49.4	11,800	1.180
	도시가스(LNG)	Nm <sup>3</sup>	43.1	10,290	1.029	38.9	9,290	0.929
	도시가스(LPG)	Nm <sup>3</sup>	63.6	15,190	1.519	58.4	13,950	1.395
석탄 (7종)	국내무연탄	kg	19.8	4,730	0.473	19.4	4,630	0.463
	연료용 수입무연탄	kg	21.2	5,060	0.506	20.5	4,900	0.490
	원료용 수입무연탄	kg	25.2	6,020	0.602	24.7	5,900	0.590
	연료용 유연탄(역청탄)	kg	24.8	5,920	0.592	23.7	5,660	0.566
	원료용 유연탄(역청탄)	kg	29.2	6,970	0.697	28.0	6,690	0.669
	아역청탄	kg	21.4	5,110	0.511	19.9	4,750	0.475
	코크스	kg	29.0	6,930	0.693	28.9	6,900	0.690
전기 등 (3종)	전기(발전기준)	kWh	8.9	2,130	0.213	8.9	2,130	0.213
	전기(소비기준)	kWh	9.6	2,290	0.229	9.6	2,290	0.229
	신탄	kg	18.8	4,500	0.450	-	-	-

### 비고

1. “총발열량”이란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의 잠열을 포함한 발열량을 말한다.
2. “순발열량”이란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의 잠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3. “석유환산톤”(toe: ton of oil equivalent)이란 원유 1톤(t)이 갖는 열량으로 10<sup>7</sup>kcal를 말한다.
4. 석탄의 발열량은 인수식(引受式)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코크스는 건식(乾式)을 기준으로 한다.
5. 최종 에너지사용자가 사용하는 전력량 값을 열량 값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1kWh=860kcal를 적용한다.
6. 1cal=4.1868J이며, 도시가스 단위인 Nm<sup>3</sup>은 0℃ 1기압(atm) 상태의 부피 단위(m<sup>3</sup>)를 말한다.
7. 에너지원별 발열량(MJ)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며, 발열량(kcal)은 발열량(MJ)으로 부터 환산한 후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다. 두 단위 간 상충될 경우 발열량(MJ)이 우선한다.



## Ⅱ

## 세제지원 안내

1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

중소기업 중 ESCO 업종 특별세액감면



1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세액공제와 관련한 상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 세무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 홈페이지 <http://www.nts.go.kr/>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26 번으로 문의

□ 개 요

- 에너지절약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개인이 법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

□ 지원내용

- 근 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지원 내용

-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내국인 :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

○ 지원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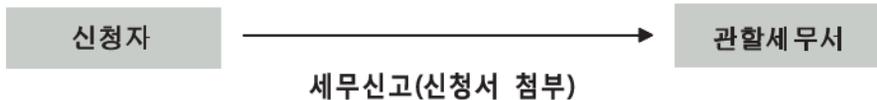
-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음
-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 대상시설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8의3」에 해당하는 에너지 절약 시설
  - 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8의4」에 해당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

## □ 조세감면 절차 및 방법

- 기획재정부령 등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의 경우
  -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



- 그 밖의 시설인 경우
  - 한국에너지공단에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확인 후 관할 세무서에 신고

## □ “그 밖의 시설”의 대상 및 확인절차

- 시설투자확인 대상설비 :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 대상설비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3] 에너지절약시설에 열거되지 아니한 그 밖의 시설로서 에너지 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의 이사장이 시범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시설투자확인을 신청 받으려면
  - 대상시설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

[첨부]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설비

○ 에너지절약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8의3)

구 분	시 설 내 용	적 용 범 위
1.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설	가. 산업·건물 부문 에너지 절약 설비	<p>1) 보일러·요(窯)·로(爐) 및 그 부속장치(산업·건물 공통)</p> <p>가) 보일러 증발량이 시간당 0.5톤 이상인 것으로서 에너지사용효율을 10퍼센트 이상 향상시키거나, 석유환산기준으로 연간 100킬로리터 이상의 에너지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기존 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으로 한정한다]</p> <p>나) 요(窯)·로(爐) 요·로 안의 최고 온도가 섭씨 500도 이상인 것으로서 폐열 회수율이 20퍼센트 이상이거나, 석유환산기준으로 연간 100킬로리터 이상의 에너지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기존 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으로 한정한다]</p> <p>다) 보일러관수를 자동으로 연속하여 배출하는 장치</p> <p>라) 초음파 스케일 방지기(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마) 보일러 급수 처리장치(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 지역냉·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및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 공급시설[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은 제외한다]</p> <p>3) 폐기에너지회수설비(산업·건물 공통)</p> <p>가)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연료 및 원재료를 예열하는 설비</p> <p>나)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p> <p>다) 그 밖에 폐기되는 자원을 이용하여 열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p> <p>라) 폐열회수형 히트펌프(공기열원은 제외한다)</p> <p>마) 클링커 냉각기(Cross Bar Cooler)</p> <p>4) 고효율 유체기기 및 제어장치(산업·건물 공통)</p> <p>가) 원심식 다단진공펌프(실워터가 불필요하고 공기량이 자동 조절 되는 것으로 한정한다)</p>

구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p>나) 고온응축수펌프(사용온도가 섭씨 100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p> <p>다) 초고온공냉식년셀캔드모터펌프</p> <p>라) 에너지절약형 유체커플링(유체기기에 직접 연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p> <p>마) 압축기(인버터제어)</p> <p>바) 고속 터보블로워[전동기직결형으로 1만 회전수(rpm) 이상으로 한정한다]</p> <p>사) 고효율 변압기(「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서 고효율 제품으로 한정한다)</p> <p>아) 프리미엄급(IE3) 삼상유도전동기(「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서 프리미엄급 제품으로 한정한다)</p> <p>5) 그 밖에 산업용 설비</p> <p>가) 어큐물레이터</p> <p>나) 압축공기제습장치</p> <p>다) 주파수 변환식 회전수 제어장치(인버터) [220킬로와트(kw) 이하는 고효율인증기자재로 한정한다]</p> <p>라) 증기 재압축식 증발농축장치</p> <p>마) 다중효용증발관(3중 이상으로 한정한다)</p> <p>바) 산소부하시스템</p> <p>사) 증기재압축장치</p> <p>아) 증기터빈 구동식 동력장치</p> <p>6) 건물에너지 절약설비</p> <p>가) 건물자동화 제어장치(온도·조명·열원·풍량·공조 부문 중 2가지 이상을 제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나) 제습공조장치(냉각코일에 의한 제습은 제외한다)</p> <p>다) 가습공조장치(수가습 방식으로 한정한다)</p> <p>라) 스프링클시스템(분사정도가 센서로 자동조절되는 것으로 한정한다)</p> <p>마) 야간단열장치</p> <p>바) 태양광차단장치</p> <p>7) 에너지관리시스템(EMS)(「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p>

구분	시설 내용	적용 범위
	<p>나. 전력수요 관리 설비</p>	<p>1) 역률자동조절장치                      2) 최대수요관리감시제어장치 (최대수요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전기대체냉방시설 (건물 각 층에 설치되는 공조기 및 냉온수 배관은 제외한다)                      가) 가스냉방시설                      나) 축열식냉방시설                      다) 흡수냉방시설</p>
	<p>다. 고효율인증 기자재</p>	<p>「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에 따른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다음의 제품                      1) 엘이디(LED)조명 (램프 및 등기구)                      2) 고효율인증보일러                      3) 무정전전원장치                      4)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5) 원심식 송풍기                      6) 항온항습기                      7) 고기밀성 단열문                      8) 전력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p>
	<p>라.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p>	<p>「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0조에 따른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으로 인증한 다음의 제품                      1) 자동절전제어장치</p>
<p>2.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p>	<p>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p>	<p>「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p>
<p>3. 그 밖의 시설</p>	<p>그 밖의 에너지절약시설</p>	<p>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의 이사장이 시범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p>

## □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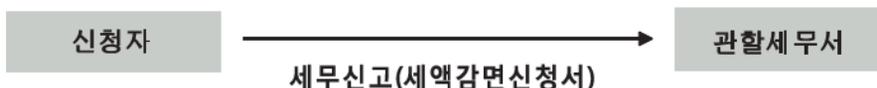
- 중소기업 중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감면하여 주는 제도

## □ 지원내용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지원 내용
  - 중소기업 중「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 비율을 적용
- 감면 비율
  - 소기업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 : 100분의 5
  -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 □ 조세감면 절차 및 방법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



## 2019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안내

---

발행인 김 창 섭

발행처 한국에너지공단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23(우정동)

Tel. ESCO 투자사업 : 052) 920-0491~2,5-6

절약시설 설치사업 : 052) 920-0491~6

Fax. 052) 920-0500

<http://www.energy.or.kr/jagum>

발행일 2019년 1월

---



## 사업별 문의처

- 절약시설 설치사업 052-920-0491~6
- ESCO 투자사업 052-920-0491~2,5~6
- 금융·세제지원 052-920-0481~5
- FAX 052-920-0500
- 자금지원 홈페이지 [www.energy.or.kr/jagum](http://www.energy.or.kr/jagum)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한국에너지공단  
KOREA ENERGY AGENCY